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세종의 여성 성(性)인식과 동성애의 처벌  
-세자빈 봉씨 사건을 중심으로



202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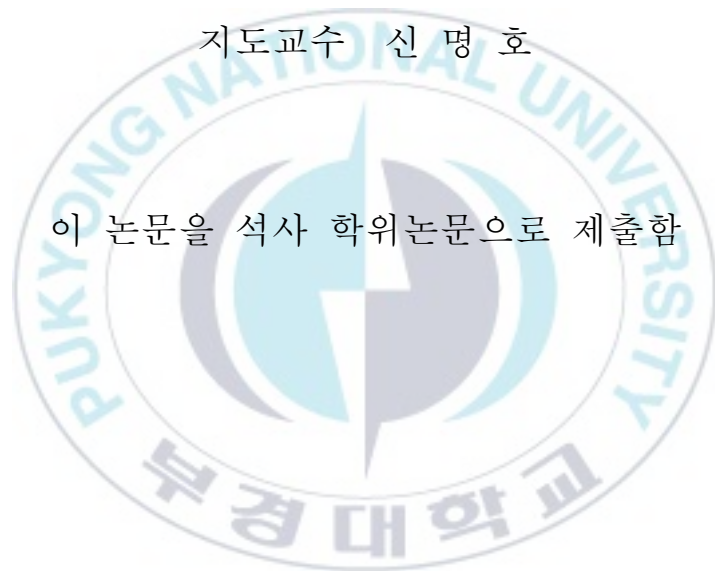
안 현 준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세종의 여성 성(性)인식과 동성애의 처벌  
-세자빈 봉씨 사건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신 명 호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안 현 준

안현준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27일



위원장 문학박사 이 근 우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문 기 (인)

위 원 문학박사 신 명 호 (인)

# 【목 차】

## Abstract

|                                              |    |
|----------------------------------------------|----|
| I. 머리말 .....                                 | 1  |
| 1. 문제의식 .....                                | 1  |
|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                       | 9  |
| II. 세종의 여성 성(性)인식 .....                      | 14 |
| 1. 국가적 성규범의 기초 : 『小學(소학)』 .....              | 14 |
| 2. 표본화 만들기 작업 : 『三綱行實圖(삼강행실도)』 .....         | 30 |
| III. 두 번째 세자빈의 폐출 : 순빈 봉씨 사건 .....           | 38 |
| 1. 사건의 전말 : 세종 18년 10월 26일과 11월 7일의 기록 ..... | 38 |
| 2. 세종의 폐빈 논리 : 유교 논리의 구현 .....               | 47 |
| 3. 『大明律直解(대명률직해)』 범간조(犯奸條)와의 비교 및 의의 .....   | 58 |

|               |    |
|---------------|----|
| IV. 맺음말 ..... | 66 |
| 참고문헌 .....    | 69 |



King Sejong's Female Gender Awareness and Punishment of  
Homosexuals - Focusing on Crown Princess Bong's Case

Hyun June Ahn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ing Sejong's female gender consciousness and punishment of homosexuals by focusing on the case of Crown Princess Bong. In King Sejong's era, Confucianism was expected to be widespread throughout the public as well as the royal family and the upper-class families. The King wanted to ensure Confucianism, which was the ideological framework of the dynasty, completely pervade the society of Joseon Dynast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Sohak' and 'Samganghaengsildo', which are scriptures of Confucianism. Through these two books, it can be better understood how the educated of that era perceived women.

'Sohak' is compilation book comprised of various scriptures through which Confucian philosophy and thoughts are integrated. This book explains the behaviors, conduct, and perspective that the women in a Confucian society must possess and express from a foundational basis,

and from this book, we can identify sexual regulations imposed upon women in the patriarchal system of the era. From the section pertaining to the virtuous woman of 'Samganhaengsildo,' we can better understand how the women's sexuality was regulated at the national level in Joseon Dynasty. Women at that time were forced to be desexualized, maintain their chastity, and live out the remainder of their life as a widow, remaining faithful to their deceased husbands should those husbands pass away before their wives. This is a type of heavy-handedness and violent approach of the men and the nation against women as an establishment of an improper model.

The case of Crown Princess Bong is about a homosexual relationship between Crown Princess Bong and Sossang, a court lady maid of honor. King Sejong was vehemently against homosexuality and even issued the ban for punishing homosexuals among court ladies in person. However, he could not apply this ban to his wife, the Crown Princess Bong. King Sejong did not want keep a record of this case and used the seven valid causes, including disobedience, jealousy, sexual immorality, and theft, as the reason for his divorce from Crown Princess Bong. This case may be considered as an actual example where Confucian ideology applies as we examined above.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on King Sejong's prohibition order and examines the level of punishment against homosexuals compared with the one described in the section of 'Daemyeongryuljikhae' related to adultery. At that time, the punishments for homosexuals were at a similar level of severity to the ones for general sexual crimes.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would like to ultimately examine certain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hopes the readers take this opportunity to gain a new perspective on the Joseon Dynasty.



# I . 머리말

## 1. 문제의식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性)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된 개념은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다. 남녀로 구분지어진 성별간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양성평등의 논리로 일상생활 내에 존재하는 차별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성범죄 처벌, 직장 내지 정치권에서의 남녀 균등 선발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논쟁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짐에 따라 성담론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이 중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성소수자 중 여성 동성애다. 동성애를 간단히 정의하면 자신과 같은 성(性)의 대상에게 심리적·성적으로 끌리는 것이다.<sup>1)</sup>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성별에 따라 게이 또는 레즈비언으로 지칭하거나, 통틀어 동성애자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는 성적 담론이 구체화되고 개개인의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음으로써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인 퀴어(Queer)가 사용되고 있으며 큰 틀에서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다.<sup>2)</sup>

1) 애너매리 야고스 저, 박이은실 역(2012), 『퀴어이론 입문』, 여이연, 17쪽.

2) ‘퀴어’라는 비특정성이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정체성의 범주인 ‘게이’와 ‘레즈비언’이 갖는 배제주의적 비판에 대해 맞서고, 필수적 맥락으로 여겨지는 행동

이와 관련해 이종원(2011)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은 자신을 성적 존재로 어떻게 보는가 하는 성적 자아개념을 지칭하며,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동성애는 더 이상 고정된 것이거나, 변화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즉, 인간의 성은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이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된다.<sup>3)</sup>

동성애는 여러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이성애만이 고정적이며 정상적인 사랑의 형태는 아니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성애 관련 이슈들이 우리 사회의 일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3S 정책(Screen, Sports, Sex)과 해외여행 자유화 등 높아진 소비욕구와 국내외 가십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소비 태도 속에서 나타났다. 전원근(2015)<sup>4)</sup>은 당시에 만들어진 동성애 담론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성애는 한국사회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외부에서 발견되는 신기한 현상들 중 하나로, 개인의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소개되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농담거리로 소비되었다. 다만 이것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민족과 국가를 타락시킬 수 있는 문제로도 인식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1985년 한국에서 첫 에이즈(AIDS)의 감

---

적·이론적 영역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거치고자 한다. (애너매리 야고스 저, 박이은실 역(2012), 앞의책, 124쪽.)

3) 이종원(2011), 「동성애자들의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 『철학논총』 제65집, 316쪽.

4) 전원근(2015), 「1980년대 선테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제2호, 139~170쪽.

염자 발생과 더불어 광범위한 전파에 대한 공포가 퍼질 무렵 외국인 및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동성애가 전파의 주요 매개체로 지목되면서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사회가 동성애를 질병의 근원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게 되면서 동성애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만 했다. 굳건히 자리 잡힌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그들은 가정을 파탄 내는 병자들로 취급당할 뿐이었다. 그러던 와중 연예인 홍석천의 커밍아웃과 트랜스젠더 하리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미디어에서 이들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주는 듯 했다.

당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홍석천의 커밍아웃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것은 동성애가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만 접해오던 가십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현상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를 둘러싼 미디어의 재생산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이 당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또한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그가 겪었던 차별과 고통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으로만 이해되었다. 하리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자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친구들과 주로 어울려 인형놀이, 고무줄놀이와 같은 여성적인 놀이를 좋아했던 유년시절의 경험에 초점을 두면서 트랜스젠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서사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여성성을 부각시키면서도 그녀가 임신할 수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임을 이야기함으로써 일반 이성애 가정에 대입해 사회 일반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수용되는 만큼의 이미지만을 소비시키고자 했다. 즉, 이성애자들이 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을 통제하고 탈(脫)정치화시켜 오직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하고자 했다.<sup>5)</sup>

영화와 드라마에서 소비되는 동성애의 이미지도 큰 차이는 없다. 초중반 극의 전개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녀주인공 사이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시청자들의 몰입을 높이려 한다. 이성애의 틀 안에서 소비될 수 있을 정도만 가져다가 쓰는 것이다. 2007년에 MBC에서 방영되었던 <커피프린스 1호점>의 경우 여주인공을 남자로 착각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동성애적인 면모를 부각하여 전개를 이어나갈 듯 스토리를 이끌어가지만, 남자가 아닌 여성임을 알게 되면서 그간의 일들은 해프닝으로 치부되고 이성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며 마무리된다. 2010년 KBS2에서 방영되었던 <성균관 스캔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주인공의 남장으로 인해 그들이 같은 성을 넘어 호감을 표하며 금기를 어기는 사랑을 보여주는 듯 한 전개를 이어가지만 결국엔 정체성이 밝혀지면서 이성애적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서사장치로 전략하고 만다. 그리고 주변인물로 미소년 혹은 예쁘장한 남성들을 함께 등장시켜 남자들의 우정, ‘브로맨스’를 강조하며 이성애적 규범 내에서 유사 동성애적 코드를 넣어두고 소비하였다.

2010년 SBS에서 방영되었던 <인생은 아름다워>의 경우 대가족의 일상 속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룬다고 하여 방영 초기부터 신문에 반대 광고를 내는 등 논란이 있었다.<sup>6)</sup>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운 가족 드라마는 처음으로 방영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방영동안에 여러 단체들의 반대 광고 및 시위가 이어지는 등의 잡음이 있었지만, 드라마는 주인공 가족을 중심으로 갈등의 해소과정을 잘 그려냄으로써 높은 시청률로 증명하였다. 이는 앞서 소개한 드라마들과는 달리 성소수자의 문제를 잘 담아낸 작품으로 평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홍석천과 하리수의 사례가 개인의 문제에만 집

5) 박지훈·이진(2013),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텔레비전에 나타난 홍석천과 하리수의 이미지 유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28호, 5~42쪽.

6) 정철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 되면 책임져라? 29일 ‘조선일보’에 실린 동성애 반대 광고 논란”, PD 저널, 2010.09.30. 수정,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4>, 2021.04.08. 접속.

중되었던 것과 같이 갈등의 표출과 해소 공간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겪는 차별이나 고충은 등한시하면서 가족구성원의 문제로만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sup>7)</sup>

사회 대중 매체에서 동성애를 다룸으로써 대중들이 이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실제로 오늘날은 TV, 라디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다양한 소셜미디어(SNS)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밝히며 자신의 소신을 주변인에게 당당하게 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전 사회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포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뜻이 맞는 이들이 연대하고 상호 소통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시선도 상대적으로 유연해지는 계기가 되어 배타적·폐쇄적이었던 분위기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sup>8)</sup> 2000년부터 시작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기점으로 광주, 전주, 부산 등의 지역에서 매해 개최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가 하나의 예다. 축제 시간 동안 관련 부스 운영을 통하여 잘못 알려진 동성애 문화에 대한 오해와 차별을 바로 잡으려 하고, 동성애자가 일상 가까이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영화 상영, 거리 행진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과 같은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그 속에 녹아들고자 한다.

하지만 축제 초기 일부 참가자들의 선정적인 의상과 표현방식, 성기 모양을 형상화한 굿즈 판매 등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퀴어문화축제 근처에서 반대 단체의 시위를 비롯한 부스 운영도 함께

7) 조서연(2012),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타난 TV드라마의 동성애」, 『한국극예술연구』 제35집, 365~401쪽; 이자혜(2012),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 재현과 담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555~566쪽.

8) 유은혜(2018),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3호, 185~209쪽.



이루어진다. 각 지자체는 이들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축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변 상가주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린다.<sup>9)</sup> 열린사회로 가는 추세라도 동성애는 아직까지 ‘개인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사회 일반 통념에 반하는 천박한 것’이라는 의견들로 분분하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을 때 역으로 이성애에 대한 차별이 가해질 수 있고, 그동안 유지해왔던 유교적 가부장제의 정상적인 가족의 틀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성소수자들 내부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 동성애 문화는 남성 위주의 소위 ‘게이’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 미디어에서는 동성애를 남성들 위주로 그려내어, 그들의 외모와 몸을 부각해 상품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방식의 고착화는 자연스럽게 남성 동성애자들만이 사회의 일면으로 부각되는 것과 연결된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다뤄지는 여성들 간의 사랑 또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현실적 모습은 그들을 더욱 음지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동성애 커뮤니티 내에서도 남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 자신들의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에만 관심을 두고 레즈비언을 비롯한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차

9) 김신의, “올해도 퀴어축제 ‘선정성’ 논란”, 크리스천투데이, 2019.06.03. 수정,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2928>, 2021.03.28. 접속; 김선경, “경남 처서 퀴어축제·반대집회 동시 개최 앞두고 긴장 고조”, 연합뉴스, 2019.11.26. 수정,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114600052?input=1195m>, 2021.03.28. 접속; 류한열, “류한열의 서향만리 - 무지개가 아름다울 수 없는 이유”, 사설, 경남매일, 2019.11.28. 수정, [http://www.gnmaeil.com/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kohflyu](http://www.gnmaeil.com/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kohflyu), 2021.03.28. 접속.

10) 여성훈(2019), 「한국 사회의 동성애 담론의 구조적인 난제」, 『神學과 世界』 제 96호, 193쪽.

별금지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보고자하는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동성애에 대한 전반적 이해나 그들을 지칭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비슷하였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다. 동성 간의 결합은 음양의 조화를 해치는 비정상적 행동사고였기에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규경(1788~1856)은 『五洲衍文長箋散稿(오주연문장전산고)』의 「男寵辨證說(남충변증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五雜組(오잡조)』에 이르기를, “남색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書經(서경)』 「伊訓(이훈)」에 ‘어린 아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상고시기부터 그러했음을 알겠다.” … 우리 조선에서는 세간 마을(閭巷)의 무뢰배(無賴輩) 등이나, 사찰(寺刹)의 추한 중들이 서로 본받아 이러한 짓을 할 뿐이다. 불서(佛書)에 사람 신체에 흥분을 일으키는 곳은 일곱 군데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앞쪽 성기와 뒤쪽 항문과 입, 양 손과 발의 굽은 부분이다. 서역 천축에도 동일하다. 『오잡조』에 이르기를, “입으로 침을 받아먹는, 오줌을 받아먹는 자도 있으니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sup>11)</sup>

『五雜組(오잡조)』의 기록을 바탕으로 남색(男色)이라는 것은 어린 남자 아이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는 상고시대 때에도 이미 나타났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조선의 경우는 민간의 배우지 못한 무뢰배들, 사찰의 중들이 행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남색은 오래전부터 이어

1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男寵辨證說」, 『五雜組』云. 男色之興. 自「伊訓」有比頑童之戒. 則知上古已然矣. … 我東, 則閭巷無賴等 寺刹醜髡, 互相效習而已. 佛書載人身受姪有七處. 即前後竅及口與兩手兩足彎也. 此俗. 西域天竺亦有之. 『五雜組』曰, 有以口承唾者. 亦以口承便溺者. 其受姪. 又何足怪也.



저오던 행위였으며 유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올바름을 행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의 짓거리라고 한정하고 있다. 다만 불서에 적힌 다른 성적 행위를 같이 논거하며 남성끼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 괴이할 게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어 하나의 풍습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1590년 일본을 다녀와 『海槎錄(해사록)』을 기록한 김성일(1538~1593)은 좀 더 비판적인 논조로 남색에 대해 다룬다.

“더러는 남창(男倡)을 꾸며서 손님을 즐겁게 하며, 평소에도 남색(男色)으로 자기를 모시게 하여, 첩보다 더 귀여워한다. 혼인에 같은 성을 꺼리지 않아 사촌 남매가 부부가 되며, 부자가 함께 한 창녀를 상관하여도 또한 그르게 여기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짐승이다.”<sup>12)</sup>

여기에서 김성일은 일본의 풍습 중 창기(娼妓) 문화를 거론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꾸며 손님을 대접한다는 점이다. 또한 남자를 첩보다 더 귀여워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동성동본 혼인과 난잡한 성문화를 지적하며 짐승과도 같다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규경과 마찬가지로 유교적인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시에 동성애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강문중(2015)<sup>13)</sup>의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다양한 용어를 정리해 두었다. 계간(鷄姦), 남간(男奸), 남색(男色), 남충(男寵), 대식(對食), 북충(北衝), 풍남지희(風男之戲), 비역질, 밴대질 등이 그 예다. 남녀를 모두 일컫는 대식과 여성만을 지칭하는 밴대질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간의 성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즉, 조선시대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12) 金誠一, 『海槎錄』 「聞見雜錄」, 或飾男倡以娛客. 平居亦以男色自侍. 嬖之甚於姬妾. 至於嫁娶. 不避同姓. 四寸甥妹爲夫婦. 父子并淫一娼. 而亦無非之者. 眞禽獸也.

13) 강문중(2015), 「전통시대 同性愛 연구」, 『영주어문』 제30권, 5~38쪽.

중심이 되어 문헌에 기록되었다. 이는 기록의 주체가 주로 남성이었다는 시대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도 동성애가 남성 중심적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성 동성애에 대한 고찰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세종시기에 있었던 세자빈 붕씨 사건에 집중하고자 한다. 붕씨는 당시 세자의 두 번째 세자빈으로 입궁하였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궁녀와의 동성애 스캔들로 인하여 폐빈 당한다. 여성 동성애가 흔치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세종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자 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유교적 논리가 뒷받침되어 세자빈이 쫓겨나게 되는지와 그 처벌은 무엇이었나를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논지는 오늘날 동성애를 조선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국가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를 바탕으로 성과 관련한 문제를 논하는데 어떠한 논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건국 후 조선에서 여성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처벌에 초점을 두으로써 이전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했던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동성애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종교적 관점, 의학적 관점, 사회학 관점 등이다. 종교적 관점은 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주로 기독교 교리나 성경에 나온 구절을 토대로 논지를 진행한다. 동

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교리를 통한 회개를 이야기하거나, 찬반의 논리로서 다루고 있다. 또한 교회의 인식 변화를 주장하며 성소수자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볼 수 있다.<sup>14)</sup> 의학적 관점의 경우는 정신질환의 한 측면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있고, 정체성 확립과정과 가족문제 등 개인정서와 심리를 고찰하고 있다.<sup>15)</sup> 사회적 관점은 TV드라마와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방식과 전개과정 등을 이야기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혹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 뉴스프레임 연구, 헌법 조항 고찰(균형법 속 추행죄) 등의 연구들도 있다.<sup>16)</sup>

역사적 측면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강문중(2015)<sup>17)</sup>은 전통시대 동성애에 대한 자료와 용어의 정리, 역사적 사례 및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 
- 14) 허호익(2010),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 - 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단』 제38호, 237~260쪽; 이관택(2009), 「성적소수자에 관한 기독교 윤리학적 연구 : 동성애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쪽; 홍성수(2019),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성소수자」, 『가톨릭평론』 제21호, 47~54쪽.
  - 15) 공성욱·오강섭·노경선(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제41권 제5호, 930~941쪽; 이영선·권보민·이동훈(2012),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제19권 제1호, 129~147쪽; 김경호(2009), 「청소년 동성애와 상담방안에 관한 연구 : 개별, 집단, 가족, 학교 상담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135~168쪽.
  - 16) 양성희(2009), 「대중문화 속 동성애 표현의 현주소」, 『관훈저널』 봄호 통권110호, 113~118쪽; 김미라(2020), 「TV드라마 장르 - 사회간 공진화 연구 - 동성애 재현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69집, 139~177쪽; 조현준(2009), 「팬픽 문화와 젠더 트러블 - 동성애 코드를 다루는 영화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봄호 통권 제80호, 243~259쪽; 이정민·이동영(2019), 「대학생이 인식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교연구 : 장애인·다문화인·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차이 및 영향요인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3권, 61~98쪽; 한윤화(2013), 「동성애 관련 뉴스 프레임 연구 :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74쪽; 김명수(2012),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 균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1호, 59~89쪽.
  - 17) 강문중(2015), 앞 논문, 5~38쪽.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고려시대의 경우는 전무(全無)하고 조선시대 역시 『方翰林傳(방한림전)』, 『李聖先傳(이성선전)』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고 동성애 의미로 사용되었던 다양한 용어들을 분석해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동성애 분야에서 조차 남성 중심주의가 드러나는 것, 남성 중심의 문학적 형상화와 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 조선시대 동성애가 다양한 계층과 계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등이다.

김경미(2008)<sup>18)</sup>는 조선후기에 저술된 『방한림전』에서 나타난 동성혼과 작품의 두 주인공 방관주와 영혜빙의 지기(知己) 관계의 실상은 동성애적 면모가 은폐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작품 속에 조선후기 달라진 여성의식과 새로운 성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간의 동성혼이 당대의 젠더규범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성애적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절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동성애를 탈성화(脫性化)시켰기에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역사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고전 소설 혹은 풍속에 드러난 동성애적 모티프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동성애가 드러나 있는 문헌과 관련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의 수는 많이 부족하다.

세자빈 봉씨, 궁중 동성애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문중(2015)<sup>19)</sup>은 『世宗實錄(세종실록)』에 있는 순빈 봉씨 사건의 기록을 토대로 그 과정을 상세히 서술해두었다. 한희숙(2010)<sup>20)</sup>은 순빈 봉씨와 더불어 태조 때

18) 김경미(2008),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 「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제17권, 189~216쪽.

19) 강문중(2015), 앞 논문, 17~20쪽.

20) 한희숙(2010), 「조선 태조·세종대 세자빈 폐출 사건의 의미 : 현빈 유씨, 휘빈 김씨, 순빈 봉씨를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제14호, 229~243쪽.

세자빈이었던 현빈 유씨와, 문종의 첫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의 폐출을 함께 묶어서 다루고 있다. 강문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 어떤 사유가 적용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또한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던 시기에 왕실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도덕성과 억압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에 궁중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 했다. 김용숙(1983)<sup>21)</sup>의 연구에서는 궁녀들 간의 동성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궁녀들 사이에 동성애가 종종 싹트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벗이라 부르고 몸매 붕(朋)을 새겼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세자빈 붕씨 사건을 언급하는 연구와 단행본들이 있지만 대체로 폐출된 이유가 동성애였음을 얘기하거나 어우동, 사방지 등과 같이 조선에서 발생했던 성 스캔들의 하나로 묶어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이다.<sup>22)</sup>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과정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지만, ‘특이한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가벼운 논조들 외의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유교 사회의 이론과 연계한 동성애 처벌에 대한 연구가 없음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조선 건국 후 통치이념을 굳건히 하기 위해 『三綱行實圖(삼강행실도)』와 『小學(소학)』을 보급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해 세종대 이루어졌던 논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학』과 『삼강행실도』 열녀도 부분에 내포된 유교이념과 여성의 성인식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당대 성규범을 어떻게 확립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을

21) 김용숙(1983), 「구한말의 궁중풍속(溝韓末의 宮中風俗)」, 『문화재』 제16권, 178~201쪽.

22) 정성희(1998), 『조선의 성풍속(여성의 성문화로 본 조선사회)』, 가람기획, 273~281쪽; 신명호(2004), 『궁녀』, 시공사, 272~276쪽.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세자빈 봉씨 사건의 전말과 세종의 대처를 들여다보고 처벌의 근거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大明律直解(대명률직해)』의 성범죄 처벌을 기준으로 동성애 처벌의 수위가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세종의 시각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Ⅱ. 세종의 여성 성(性)인식

### 1. 국가적 성규범의 기초 : 『小學(소학)』

유교에서 남녀를 성별에 따라 구분 짓는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로 ‘남녀 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 있다. 이 말은 『禮記(예기)』 「內則(내칙)」편에 나오는 것으로 아이가 자라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 남녀 사이의 엄격한 구별을 의미한다. 고려시대까지 주류 사상이었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중심으로 한 교화를 희망했던 조선의 지도층들은 왕실 및 사대부 가(家)는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그 뜻을 익히게 하여 실현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유학서를 인쇄하여 배포했는데 그 중 하나가 『小學(소학)』이다.

옛날에 소학에서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 소제하는 일, 남의 말에 응대하는 법, 몸가짐의 절도(節度)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하는 도리를 가르쳤다. 이것은 모두 몸을 닦고 집안을 정제하며, 나라를 다스려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어릴 때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은, 그 익힘이 지혜와 함께 성장하고, 교화(敎化)가 마음에 젖어서 선악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게 하여, 사심(私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근심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sup>23)</sup>

23) 『小學』, 小學書題. 古者小學, 教人以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 皆所以爲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本. 而必使其講而習之於幼穉之時, 欲其習與智長,



『소학』은 송(宋)대에 주희(朱熹)가 소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개탄하여 예전의 소학에서 실시하던 교육 내용으로 된 글들을 모으고, 그와 관련한 옛 성현들의 말과 행실을 수록한 책이다. 어려서부터 예절을 배우면서 삶의 보편적인 방식을 습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수신서(修身書)이다. 내용은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편은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 네 편으로, 외편은 가언(嘉言)·선행(善行)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교·명륜·경신은 여러 문헌에서 발췌한 글들을 수록하여 유학의 기본 바탕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계고·가언·선행에서는 성현들의 실제적 행실을 옮겨두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중점에 두고 있다.<sup>24)</sup>

『소학』의 중요성은 조선 중기 사림(士林)들의 당대 학문적 기초로 자리 잡으면서 높아져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가 사림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sup>25)</sup> 연구들에서는 조선시대 『소학』의 사회 전반적 보급이 종종 연간에 이르러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종종 이전의 선대(先代) 왕들이 『소학』을 낮게 보았다거나, 보급에 있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이 나서 여덟 살이 되어 『소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동몽(童蒙)의 교양이 지극히 바르고 지수(持守)하는 것이 굳게 정해지나 ... 이 글을 궁벽한 촌간에

---

化與心成，而無扞格不勝之患也.

24) 이기석(2008), 『소학』, 홍신문화사, 7~8쪽.

25) 이정철(2015), 「조선시대 사림의 기원과 형성」, 『조선시대사학보』 제73집, 7~42쪽; 윤진욱(2010), 「조선전기 ‘소학계 연구」, 『경주사학』 제32집, 111~143쪽; 김용현(2011), 「조선전기 사림과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제19집, 35~78쪽.

까지 보급하고자야 사람들이 효도로 지아비를 섬기고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길 줄 알아서 선후와 차서가 분명히 갖추어질 것입니다. 세종조에는 오로지 『소학』의 도에 마음을 썼으므로 책도 중외에 반포하였는데, 근래는 사람들이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책도 아주 없어졌으며, 뜻이 있는 선비들까지도 몸소 행하기를 꺼립니다. … 이제 상께서 단연코 그것을 읽으시면 사림(士林)이 듣고서 고무 진작되어 다스려지게 하는 바른 방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sup>26)</sup>

위 기사는 조광조가 경연에서 중종에게 근래의 선비들이 『소학』을 간과하고 배움에 나서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왕이 나서서 읽는다면 모두 따라서 행할 것임을 아뢰는 내용이다. 주지하듯 조광조를 필두로 했던 사림세력들은 『소학』을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유교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세종대에도 『소학』의 교육과 보급에 힘을 썼다는 부분이다. 이남희(2018)<sup>27)</sup>도 이를 언급하며 조선시대 여성의 삶과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박흥규·송재혁(2012)<sup>28)</sup>도 세종대 『소학』을 통해 민풍(民風)과 사풍(士風)을 교화시키는 목적으로 보급에 노력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부터 실록의 기사를 통해 왕실에서 『소학』의 보급과 전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한다. 나아가 『소학』에서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볼 것이다.

26) 『中宗實錄』 29권, 중종 12년 9월 13일. 人生八歲入『小學』, 則蒙養至正, 持守堅定矣. … 須以此書, 遍及窮村僻巷之中然後, 人皆知事父以孝, 事君以忠, 而先後次序明備矣. 世宗朝專用心於『小學』之道, 故冊亦頒於中外, 近來非徒人不誦之, 冊亦絕焉. 至有志之士, 亦以躬行爲嫌. … 今自上斷然讀之, 士林聞之, 鼓舞振作, 致理之方, 庶得其正矣.

27) 이남희(2018), 「세종시대 『소학』의 보급·장려와 그 역사적 함의」,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19집 제2호, 155~179쪽.

28) 박흥규·송재혁(2012), 「세종과 『소학(小學)』 : 민풍(民風)과 사풍(士風)의 교화」, 『대한정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77~99쪽.

『소학』의 글은 인륜·세도에 매우 긴절(緊切)한 것인데, 지금의 학자는 모두 익히지 않으니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지금부터 경중과 외방의 교수관이 모름지기 생도들로 하여금 먼저 이 글을 강(講)한 연후에 다른 글을 배우도록 허락하게 하고, 생원시에 응시하여 태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성균정록소(成均正錄所)로 하여금 먼저 이 글의 통부(通否)를 상고하게 하여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길이 항식(恒式)을 삼으소서.<sup>29)</sup>

위 기사는 태종 7년 권근이 권학에 대한 조목을 아뢰는 것들 중 하나이다. 『소학』의 내용이 인륜과 세도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공부하는 자가 없음을 지적하고 태학에 들어가기 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주장했다. 당시에는 민중에까지 보급을 말하지는 않으나,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되어야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탁신의 진언에, “『소학』이란 글월은 사람마다 마땅히 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는 해를 당하면, 성균관의 정록으로 하여금 먼저 『소학』을 강한 후에야 바야흐로 이름을 기록에 올리게 한 것인데, 통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사람마다 『소학』에 밝을 수 있겠습니까? 『四書(사서)』와 『五經(오경)』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과거보는 날을 당해서 비로소 학생을 모아 놓고 고강하는 형편이니, 어찌 평일 경전에 능통한 자뿐이겠습니까?” … 임금이 말하기를, “나 역시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sup>30)</sup>

29) 『太宗實錄』 13권, 태종 7년 3월 24일. 『小學』之書, 切於人倫世道爲甚大, 今之學者, 皆莫之習, 甚不可也. 自今京外教授官, 須令生徒, 先講此書, 然後方許他書. 其赴生員之試, 欲入太學者, 令成均正錄所, 先考此書通否, 乃許赴試, 永爲恒式.

30) 『世宗實錄』 3권, 세종 1년 2월 17일. 卓愼曰, 『小學』之書, 誠人人之所當講明者也. 故當試年, 令成均正錄, 先講『小學』, 然後方許錄名, 而未聞有不通者, 安有人人能明『小學』乎. 至於四書五經, 亦如是耳. 當開試之日, 始集學生而考講之, 豈皆平日能通經傳者乎. … 上曰, 予亦知其有此弊也.

세종 3년의 기사에서도 『소학』을 공부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태종대에 이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성균정록소에서 통과여부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한 자를 보고 받은 적이 없었다. 즉, 시험을 보는 때에 이르러 경전을 잠시 읽고 통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선대부터 계속 이어져왔지만, 불합격자를 가려내는 일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대신들과 논의하여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참찬(參贊) 탁신(卓愼)의 진언에, “풍교(風敎)를 교화시키는 데는 『소학』과 같은 책이 없는데 국가시험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에 먼저 통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를 상고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무리들이 일찍이 이는 생각지 않고 『소학』을 알지도 못하고 기록하는 자가 많다고 하며 … 선비의 무리가 이러하니 염치의 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원컨대, 금후로는 말은 바 문신 한 명을 명하여 그들의 고강을 감독하게 하여 법과 같이 아니하는 자는 엄중하게 다스리소서.”<sup>31)</sup>

탁신(卓愼)의 진언은 세종 5년에 있었던 대신들의 진언들 중 하나다. 앞선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폐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민간의 풍속을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이 『소학』 만한 것이 없으나 유생들조차 경시하고 있으니 풍화(風化)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장차 관직에 나가 녹을 받고 민중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자들이 공부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두어야 함을 아뢴다. 이를 통해 세종대부터 『소학』

31) 『世宗實錄』 20권, 세종 5년 5월 28일. 參贊卓愼陳言, 化成風敎, 無如『小學』之書. 國試記名, 先考通否, 已有著令. 赴試之徒, 曾不致意, 未有不通『小學』而不得記名者, … 而儒者之輩, 至於如此, 廉恥之道, 無由興起. 願今後特命所司, 文臣一員監其考講, 其不如法者, 痛繩以法.

이 유교 사상의 전파를 위한 근본이 되는 경전임을 상기시키는 것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원시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비로소 문신으로 하여금 감찰을 실시하기 위해서 성균관 정록소에 대관을 나누어 배치하고 『소학』과 『家禮(가례)』를 시험 과목으로 정하였다.<sup>32)</sup>

세종 8년이 되면 단순히 통(通)과 불통(不通)만을 가렸던 『소학』이 과거 과목으로 지정된다. 이전부터 꾸준히 논해졌던 폐단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조선시대에 『소학』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이후 중종대에 사림의 기초 학문으로 자리 잡는 초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① 사부학당(四部學堂)은 오로지 『소학』의 가르침만을 맡고 있어 거기에 입학한 생도에게는 먼저 『소학』을 가르치고 나서 다른 서적을 가르칩니다. 다만 『소학』이란 서적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요긴한 말을 모아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한 『소학』은 음훈과 주해가 미비하지만 중국의 『集成小學(집성소학)』은 음훈과 주소와 명물도상(名物圖象)이 지극히 분명하게 갖추어져서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 『집성소학』 1백 권을 사오게 하소서.<sup>33)</sup>

② “『소학』은 격물치지하고 성의정심하는 근본이오니, 배우는 사람의 선무가

32) 『世宗實錄』 31권, 세종 8년 1월 27일. 赴生員試者, 始令文臣監察, 分臺于成均正錄, 所考講『小學』, 『家禮』.

33) 『世宗實錄』 30권, 세종 7년 12월 23일. 四部學堂, 職專『小學』之教. 其入學生徒, 先授『小學』, 乃授他書. 但『小學』之書, 蒐輯經史子集要語, 多有難解處. 本朝刊本『小學』, 音訓註解未備, 唯『集成小學』, 音訓註疏, 名物圖象, 極爲明備, 童蒙之輩, 可以易知. 請以 ... 買來『集成小學』一百件.



될 것입니다. 지금 판각한 책은 글자가 이지러지고 인쇄된 것이 알아 볼 수가 없어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불편하오니, 청컨대 신이 올린 『집성소학』을 주자소에 내려 보내서 인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sup>34)</sup>

위 기사들은 『소학』의 보급 문제와 관련된 기사다. ①, ② 모두 『集成小學(집성소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학』은 처음 학문을 배우는 자가 보는 글이지만 옛 문헌들에서 글을 가져와 편집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준이 높았다. 이에 음훈(音訓)과 주해(註解)가 있다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 보았다. 예조에서 중국의 『집성소학』을 수입하여 배포할 것을 아뢰었고, 세종이 이를 윤허하였다. 또한, 수입과 더불어 주자소에서 인쇄하게 하여 각 도에 나눠줌으로써 학업에 있어 어려움과 수고를 덜고자 했다.

이렇듯 조선 왕실은 건국 이후부터 유학의 보급과 관련하여 꾸준히 『소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성균정록소를 두어 통과여부를 가리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를 고치려 했다. 과거과목으로의 지정은 『소학』을 필독서의 반열로 올려 그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폐단을 바로잡고자 했던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주해서(註解書)를 들여와 보급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차원에서 돕고자 했다. 다음 단락부터는 『소학』의 내용에서 보이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볼 것이다.

① 『內則(내칙)』에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면 여러 어머니나 그밖에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반드시 너그럽고 인자하고 온화하고 공경하며 신중하고 말이 적은 사람을 가려서 아이의 스승이 되게 한다. 아이가 능히 밥을 먹게 되면

---

34) 『世宗實錄』 41권, 세종 10년 9월 8일. 『小學』乃格致誠正之本, 學者之先務也. 今板刊字缺, 未得印看, 學者病焉. 請下臣所曾進『集成小學』于鑄字所印之.

오른손으로 먹도록 가르치며, 능히 말을 하게 되면 사내아이는 빨리 대답하고 계집아이는 느리게 대답하게 하며, 사내아이의 띠는 가죽으로 하고 계집아이의 띠는 실로 한다. 여섯 살이 되면 숫자와 방위의 이름을 가르친다. 일곱 살이 되면 사내아子和 계집아이가 자리를 같이하지 않게 하며, 음식도 함께 먹지 않게 한다. 여덟 살이 되면 들어가고 나갈 때와 모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어른보다 나중에 하게 하여 비로소 사양하는 도리를 가르친다. 아홉 살이 되면 날짜 세는 것을 가르친다. 열 살이 되면 바깥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고 바깥 방에서 거처하고 잠자며 글씨와 셈을 배우게 한다. 명주 저고리와 바지를 입히지 않으며, 예절은 초보적인 것에 따르게 하며 아침저녁으로 어린이로서의 예의를 배우게 하되 간략하고 알기 쉬운 것을 청(請)하여 익히게 한다. 열세 살이 되면 악(樂)을 배우고 시를 외우며 작(勺)으로 춤추게 한다. 성동(成童)이 되면 상(象)으로 춤추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한다. 스무 살이 되면 관례하고 비로소 예를 배우며 갓옷과 명주옷을 입을 수 있으며, 대하(大夏)를 춤추며, 효제를 돈독히 행하며 널리 배울 뿐 남을 가르치지 않으며 덕을 속에 쌓을 뿐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서른 살이 되면 아내를 맞이하여 비로소 한 남자로서의 일을 처리하며, 널리 배워서 일정함이 없으며 벗과 화순하게 사귀어서 그 뜻을 본다. 마흔 살이 되면 비로소 벼슬하며 사물에 대응하여 계책을 내며 임금과 도가 맞으면 복종하고 옳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고 떠나간다. 쉰 살이 되면 대부(大夫)에 임명되어 관부(官府)의 정사를 맡아보며, 일흔 살이 되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난다.”<sup>35)</sup>

② 계집아이는 열 살이 되면 규문(閨門) 밖에 나가지 않는다. 보모가 유순한 말씨와 태도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을 가르친다. 삼배를 짜며,

35) 『小學』立敎. 『內則』曰, 凡生子, 擇於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愼而寡言者, 使爲子師. 子能食敎以右手. 能言男唯女俞. 男鰲革, 女鰲絲. 六年敎之數與方名. 七年男女不同席, 不共食. 八年出入門戶及卽席飲食, 必後長者, 始敎之讓. 九年敎之數日. 十年出就外傳, 居宿於外, 學書計, 衣不帛襦袴, 禮帥初, 朝夕學幼儀, 請肄簡諒. 十有三年學樂誦詩, 舞勺, 成童舞象, 學射御. 二十而冠, 始學禮, 可以衣裘帛, 舞大夏, 惇行孝悌, 博學不敎, 內而不出. 三十而有室, 始理男事, 博學無方, 孫友視志. 四十始仕, 方物出謀發慮, 道合則服從, 不可則去. 五十命爲大夫, 服官政, 七十致事.



누에를 쳐서 실을 뽑으며, 명주를 짜고, 실띠를 짜는 등 여자가 하는 일을 배워서 의복을 제공하게 한다. 제사에 참관하여 술, 초(醋), 제기, 김치와 젓갈 같은 것을 오려서 어른을 거들여 제물(祭物) 올리는 일을 돕게 한다. 열다섯 살이면 비녀를 꽂고, 스무 살이 되면 시집을 가는데 유고가 있으면 스물세 살에 시집을 간다. 예절을 갖추어서 맞이하여 가면 아내가 되고 그대로 가면 첩이 된다.<sup>36)</sup>

③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도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살면서 교육이 없으면 그것은 금수(禽獸)에 가깝다. 성인이 이것을 근심하여 설(契)을 사도(司徒)에 임명하여 인륜을 가르치게 하니, 아버지와 아들은 친애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고,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였다.<sup>37)</sup>

먼저 입교(立敎) 편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입교는 가르침을 세운다는 뜻으로 배움에 있어 기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①의 경우 남자의 일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여섯 살부터 일흔 살이 될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로, 먼저 아이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대답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남자는 빠르게 대답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야 함을 논한 것에 비해 여자는 느리고 천천히 답하며 따라야 하는 순종적인 모습을 어릴 적부터 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다. 유교의 근본은 예(禮)에 두고 있다. 예는 분별(分別)을 의미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 때부터 함께하지 않고 성별에 따른 행동거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것만을 보았을 때는 남성과 여성

36) 『小學』 立敎. 女子十年不出, 姆教婉婉聽從, 執麻枲, 治絲繭. 織紵組紃, 學女事, 以共衣服, 觀於祭祀, 納酒漿饔豆菹醢, 禮相助奠. 十有五年而笄, 二十而嫁. 有故二十三而嫁. 聘則爲妻, 奔則爲妾.

37) 『小學』 立敎. 孟子曰, 人之有道也. 飽食暖衣, 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을 어떻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②를 보면 남녀의 대비가 확연히 드러난다.

②의 경우는 여성의 일생을 유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열 살부터 스무 살까지밖에 없으며, 출가 후엔 한 남자의 부인 혹은 첩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열 살부터 규문 밖으로의 출입이 제한되고 웃어른과 남편을 보좌하기 위한 순종적인 태도와 가사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저 누군가를 보좌하는 인물로 규정되어 있다. 남성의 일생을 세세히 구분해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반면 여성은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자 마침표임을 보여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학』에서, 더 나아가 유교에서 여성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알 수 있는 첫 대목이다. ③의 경우는 맹자가 이야기한 오륜(五倫)에 관한 것이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며 이 내용들은 다음 명륜(明倫)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① 『내칙』에 이르기를, “...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것도 부모를 섬기는 것같이 하여,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머리 빗고, 검은 비단으로 머리를 묶어 쪽을 장식하고 ... 부모와 시부모가 계신 곳으로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간다.”하였다.”<sup>38)</sup>

② 『내칙』에 이르기를, “아들과 며느리로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는 부모와 시부모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는다. 만약 음식을 주시거든 비록 즐기지 않는 것이라도 반드시 조금 먹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옷을 주시거든 비록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입고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일을 시키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 대신케 하시거든 내가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우선 그 사람에게 일을 넘겨주어서 시키고 뒤에 돌려받는다.”하였

---

38) 『小學』 明倫 父子有親. 『內則』曰, ... 婦事舅姑如事父母, 鷄初鳴, 咸盥漱, 櫛縱笄總, ... 以適父母舅故之所.

다.<sup>39)</sup>

③ 아들과 며느리는 사사로이 가지는 재물이 없으며, 사사로이 저축하는 것이 없으며, 사사로이 가지는 기물이 없다. 감히 사사로이 남에게 빌려주거나 주지도 않는다. 누가 며느리에게 음식이나 의복·포백(布帛)·패세(佩帨)·채란(菹蘭) 같은 것을 주면, 며느리는 이것을 받아서 시부모에게 드린다. 시부모가 받으면 기뻐하기를 마치 새로 주시는 물건을 받는 것같이 한다. 만약 도로 주시면 사양하되, 사양해도 허락을 얻지 못하면 마치 다시 주시는 물건을 받는 것같이 하여, 간직해 두고 시부모가 필요로 할 때를 기다린다. 며느리에게 만약 친정 형제가 있어 주고자 하면 반드시 전에 간직해 두었던 물건을 다시 청하여 시부모의 허락을 받은 뒤에 주어야 한다.<sup>40)</sup>

④ 아들은 매우 그 아내를 좋아하나 부모가 좋아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한다. 아들이 그 아내를 좋아하지 않아도 부모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나를 잘 섬긴다.”고 하시면 아들은 부부의 도리를 다하여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한다.<sup>41)</sup>

위의 내용들은 명륜의 부자유친(父子有親)에 기록되어 있다. 자식이 된 도리로 지극히 부모를 모셔야하는 유교 사상의 효(孝)를 엿볼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며느리도 함께 포함되어 제 부모와 같이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①②③의 내용을 보면 며느리는 시부모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물어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야 행동할 수 있다.

39) 『小學』明倫 父子有親. 『內則』曰, 子婦孝子敬者, 父母舅妻之命, 勿逆勿怠. 若飲食之, 雖不嗜, 必嘗而待. 加之衣服, 雖不欲, 必服而待. 加之事, 人代之, 己雖不欲, 姑與之, 而姑使之, 而後復之.

40) 『小學』明倫 父子有親. 子婦無私貨, 無私蓄, 無私器. 不敢私假, 不敢私與. 婦或賜之飲食衣服布帛佩帨菹蘭, 則受而獻諸舅姑. 舅姑受之則喜, 如新受賜, 若反賜之則辭, 不得命, 如更受賜, 藏以待乏. 婦若有私親兄弟, 將與之, 則必復請其故, 賜而後與之.

41) 『小學』明倫 父子有親. 子甚宜其妻, 父母不說出. 子不宜其妻, 父母曰, 是善事我, 子行夫婦之禮焉. 沒身不衰.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하지만 대를 이어가는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수직적 구성은 유교 사상의 대표적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논리와 연결된다. 유학자들은 자신의 몸가짐을 닦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을 잘 다스려야 천하(국가)가 화평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정-개인’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가부장적 질서모형을 구축해 내었다. 가정 내에서 가장(父)의 역할과 권위가 극대화되고 모든 것이 그에 계로 귀속됨과 동시에 구성원 모두를 통제한다. 여성의 경우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일종의 귀속물이 되는 것이다. ④를 보면 더욱 극명히 드러나 있다. 시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식의 결혼지속여부가 정해질 수 있었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면 언제든 내쳐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로 혼인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대를 잇기 위하여 자식을 낳는 도구적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는 이후 부부유별(夫婦有別)에서 다루게 될 칠거지악(七去之惡), 삼불거(三不去) 등의 내용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다.

① 왕축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烈女)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sup>42)</sup>

② 『士昏禮(사혼례)』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보낼 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네 아내를 맞이하여 우리 종묘의 일을 계승케 하여라. 공경하는 도리로 네 아내를 인도하여 너의 어머니의 뒤를 잇게 하고, 늘 변함없게 하라.’ 한다. … 아버지가 딸을 시집보낼 때 명령하여 말하기를, ‘경계하고 공경하여 밤이나 낮이나 시부모의 명령을 어김없도록 하라.’하였다. 어머니는 작은 띠를 매주고 수건을 채워주면서 말하기를 ‘힘쓰고 공경하여 밤이나 낮이나 집안일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고 한다.”<sup>43)</sup>

42) 『小學』 明倫 君臣有義. 王蠋曰,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③ 『禮記(예기)』에 이르기를, “신(信)은 남을 섬기는 도리이니 부인의 덕이다. 한 번 혼례를 치르면 몸을 마칠 때까지 고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어도 시집가지 않는다. … 남녀의 분별이 있는 뒤에야 부자가 친애할 수 있고, 부자가 친애한 뒤에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알게 된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알게 된 뒤에야 예가 있게 된다. 예가 있는 뒤에야 질서가 바로잡혀서 만물이 안정하게 된다. 남녀의 분별이 없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없다면 그것은 금수(禽獸)의 길이다.”고 하였다.<sup>44)</sup>

④ 공자가 말하기를, “부인이란 남에게 굴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까닭에 전체(專制)하는 의리가 없고 삼종(三從)의 도리가 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순종하여 감히 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교훈이나 명령이 규문(閨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일은 음식을 공궤(供饋)하는데 있을 뿐이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종일토록 규문 안에 있으며 100리 밖에 분상(奔喪)하지 않는다. 일은 제 마음대로 하지 않으며, 행동은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서 알게 한 뒤에야 행동하며, 증거가 확실한 뒤에야 말한다. 낮에 뜰에서 놀지 않으며 밤에 안에서 다닐 때는 불을 밝힌다. 이것이 부덕(婦德)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여자가 남편으로 선택하지 않는 다섯 가지가 있다. 패역(悖逆)한 집의 아들을 택하지 않으며, 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택하지 않으며, 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택하지 않으며, 대대로 나쁜 병이 있으면 택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여윈 맏아들을 택하지 않는다. 부인이 버림받을 일곱 가지 조건이 있다. 부모에게 순종치 않으면 내보내며, 아들이 없으면 내보내며, 행동이 음란하면 내보내며, 질투하면 내보내며, 나쁜 병이 있으면 내보내며, 말이 많으면 내보내며,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내보낸다. 비록 내보낼

43) 『小學』 明倫 夫婦有別. 『士昏禮』曰, 父醮子, 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勗帥以敬, 先妣之嗣. 若則有常. … 父送女, 命之曰, 戒之敬之, 夙夜無違命. 母施衿結帨曰, 勉之敬之, 夙夜無違宮事.

44) 『小學』 明倫 夫婦有別. 『禮記』曰, … 信事人也, 信婦德也. 一與之齊, 終身不改. 故夫死不嫁. … 男女有別, 然後父子親, 父子親, 然後義生, 義生, 然後禮作, 禮作, 然後萬物安. 無別無義, 禽獸之道也.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세 가지 버리지 못할 조건이 있다. 처음 장가들 때는 친정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친정이나 가까운 친척이 없어서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으면 내보내지 못한다. 그 아내와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입었으면 내보내지 못한다. 처음 장가들 때는 빈천했는데 뒤에 와서 부귀하게 되었으며 내보내지 못한다.”고 하였다.<sup>45)</sup>

①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군신유의(君臣有義)의 마지막 부분이다. 신하된 도리로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것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부인의 절개와 신의는 남편이 죽더라도 재가하지 않고 끝까지 수절(守節)하며 남은 평생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여인을 일컬어 열녀(烈女)로 지칭하고 있다.

②③④는 부부유별(夫婦有別)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먼저 ②를 보면 부모가 자식의 결혼에 있어 남녀에 따라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차별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아들의 경우에는 가문의 대를 강조하며 아내를 맞이하여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야함을 얘기한다. 그리고 부인을 어질게 인도하여 어머니의 뒤를 잇도록, 즉 자식이 자랄 때까지 보여주었던 어머니의 내조와 헌신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딸의 경우에는 시부모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지아비를 공경하며 집안일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동하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③의 분별과 관련이 있다.

③은 『예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禮)가 바로잡혀 만물의 질

45) 『小學』 明倫 夫婦有別. 孔子曰, 婦人伏於人也. 是故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教令不出閨門, 事在饋食之間而已矣. 是故女及日乎閨門之內, 不百里而奔喪, 事無擅爲, 行無獨成. 參知而後動, 可驗而後言, 晝不遊庭, 夜行以火. 所以正婦德也. 女有五不取, 逆家子, 不取, 亂家子, 不取, 世有刑人, 不取, 世有惡疾, 不取, 喪父長子, 不取.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妬去, 有惡疾去, 多言去, 竊盜去. 有三不去, 有所取, 無所歸, 不去. 與更三年喪, 不去. 前貧賤後富貴, 不去. 凡此聖人所以順男女之際, 重婚姻之始也.



서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남녀로부터 시작하여 부자(父子)로, 이후에 못  
사람들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짐승  
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유교 논리에서 분별의 기초가 ‘예’라는 것을 다  
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동시에 유교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성별에 따라 각기 맡은 바와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에게 올바른 길임을 각인시킨다. 이와  
더불어 ‘신(信)’을 거론하여 남을 섬기는 것이 부인의 기본 도리임을 얘기  
하며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시집을 가지 않고 수절(守節)을 지켜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④의 경우, 공자의 언급에 기초하여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삼불거(三不去)의 논리를 볼 수 있다. 먼저 삼종지도는 부인은 남에  
게 굴복하는 사람으로 전제하는 의리가 없기에 출가하기 이전에는 아버지  
에게 순종하고, 시집가서는 지아비에게 순종하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  
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은 스스로 주체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에 남자에게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여성의 목소리는  
문 밖으로 새어나갈 수 없었고, 그저 규문 속의 가정에 종속되어 행동반경  
이 제약되어 남자들에게 자신의 일생을 통제당하는 수동적인 인물에 지나  
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교적 가부장제 모습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모습이자, 올바른 부덕(婦德)이 행하여지는 형태이다.

칠거지악은 부인이 버림받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이다. 부모에게 순  
종하지 않는 것(不順),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 행동이 음란한 것(淫  
行), 투기가 심한 것(妬忌), 병이 있어 몸이 건강치 못한 것(惡疾), 말이 많  
은 것(多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竊盜)이다.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절도  
를 제외하면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들로 이루어져 있다.<sup>46)</sup>

46) 김진명은 불순, 음란, 투기, 다언 등의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

불순은 『소학』의 앞 구절부터 강조되어졌던 시부모에게 지극히 봉양해야 함과 시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당할 수 있던 점을 생각했을 때, 출처(出妻) 사유의 하나인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였다. 이는 악질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여성의 건강은 출산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무자와 악질은 서로 연계되어 다루어지는 사유였다.

음행, 투기, 다연의 경우는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이 가장 모호한 것들이다. 음행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불륜이 아닌 이상 부부관계에서 ‘음(淫)’의 적용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각 집안의 생각에 따라 다른 것이다. 다연의 경우, 여성이 말이 많다는 것은 가정의 결정에 반기를 들거나 집안의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해서였다. 여성이 말이 많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던 조선시대의 관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투기의 경우, 축첩제가 허용되던 조선의 일부다처제 상황 속에서 질투를 금지하였던 것은 여성에게 극도의 인내와 이해를 바랐던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칠거지악이라는 일곱 가지 조항들은 오로지 시부모 또는 남편들에 의해 행사되었던 일방적 권리이자 남성을 의도적으로 위계질서 상위에 자리 잡도록 만들어준 권력 장치였다. 유학의 이념이 사회에 파고들수록 여성은 가정이라는 한정적인 장소에 구속되어져 갔다.

그나마 삼불거라는 제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성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긴 하였다. 시집을 온 이후에 친정 또는 친척들이 죽어 이혼 후에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경우, 함께 삼년상(三年喪)을 보낸 경우, 가난할 때 시집왔다가 집안이 부귀해진 경우가 그 예다. 아내를 쫓아내는 경우가 일곱 가지

---

다고 지적하며, 해석은 담론의 주체로서 권력을 가진 자가 가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김진명(1994), 「전통적 담론과 여성억압」, 『한국문화인류학』 제26권, 137쪽.)

이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부덕(婦德)을 명목으로 가해진 제한 사항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를 막아주는 것이 단지 세 가지일 뿐이라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게 고려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유교의 예, 분별의 근간에는 남성 중심의 사고가 다분히 깔려져 있는 것이다.<sup>47)</sup>

## 2. 표본화 만들기 작업 : 『三綱行實圖(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삼강행실도)』의 편찬은 세종 10년(1428)에 진주의 김화(金禾)라는 자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보고되자, 어지러워진 민중의 풍속을 교화시키기 위해 대신들과 논의한 뒤 『孝行錄(효행록)』을 간행하여 배포하고자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된다.<sup>48)</sup> 이 작업이 『삼강행실도』가 되어 효(孝)·충(忠)·열(烈)로 나누어 각각 백 십여 명을 뽑아 그림을 새기고, 그를 설명하는 글을 덧붙여 두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유교의 기본 윤리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실록의 기사에 있는 서문과 발미(跋尾)<sup>49)</sup>를 통해 『삼강행실도』의 편찬 목적과 성격, 여성이 갖춰야 할 모습에 대한 조선 왕실의 이상향을 알아볼 수 있다.

① 선덕(宣德) 신해(辛亥)년에 우리 주상전하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

47) 본고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의 연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영란은 『소학』을 바탕으로 여성이 가정 내에서 교육을 받았고,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나갔음을 이야기한다. (이영란 (2016), 「『소학』을 통해 본 조선시대 여성상」, 『인문학연구』 제51권, 71~98쪽.)

48) 『世宗實錄』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49) 『世宗實錄』 56권, 세종 14년 6월 9일, 『世宗實錄』 59권, 세종 15년 2월 24일.

령하셨습니다. “삼대(三代)의 정치가 훌륭하였던 것은 다 인륜을 밝혔기 때문이다. 후세에서는 교화가 점점 쇠퇴하여져서, 백성들이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큰 인륜에 친숙하지 아니하고, 거의 다 타고난 천성에 어두워서 항상 각박한 데에 빠졌다.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습관에 옮겨져서 사람의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우매한 남녀들까지 다 쉽게 보고 느껴서 분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또한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는 한 길이 될 것이다.”<sup>50)</sup>

② 효자·충신·열녀로서 우뚝이 높아서 기술할만한 자를 각각 1백 인을 찾아내어, 앞에는 형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모두 시를 붙였습니다. … 널리 민간에 퍼서 어진 자거나 어리석은 자이거나 귀한 사람·천한 사람·어린이·부녀자의 구별 없이 다 즐겨 보고 익히 들으며, 그 그림을 구경하여 그 형용을 상상하고, 그 시를 읊어서 인정과 성품을 본받게 한다면, 흠선(歆羨)하고 감탄하고 사모하여서 권면과 격려로 그들의 같은 본연의 선심이 감발(感發)되어, 자기들의 직분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sup>51)</sup>

③ 그옥이 살피보건대,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정렬(貞烈)함은 하늘의 법칙에 근본한 것이고, 신하로서 이것을 하고, 아들로써 이것을 하고, 아내로서 이것을 하는 것은 순종하는 땅의 도리에 근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법과 땅의 도리의 정해진 원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

50) 『世宗實錄』 56권, 세종 14년 6월 9일. 宣德辛亥夏, 我主上殿下, 命近臣若曰 : 三代之治, 皆所以明人倫也. 後世教化陵夷, 百姓不親, 君臣, 父子, 夫婦之大倫, 率皆昧於所性, 而常失於薄, 間有卓行高節, 不爲習俗所移, 而聳人觀聽者亦多. 予欲使取其特異者, 作爲圖讚, 頒諸中外, 庶幾愚婦愚夫, 皆得易以觀感而興起, 則化民成俗之一道也.

51) 『世宗實錄』 56권, 세종 14년 6월 9일. 孝子忠臣烈女之卓然可述者, 各百有十人, 圖形於前, 紀實於後, 而并系以詩. … 廣布民間, 使無賢愚貴賤孩童婦女, 皆有以樂觀而習聞, 披玩其圖, 以想形容, 諷詠其詩, 以體情性, 莫不歆羨嘆慕, 勸勉激勵, 以感發其同然之善心, 而盡其職分之當爲矣.

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 여자는 정숙(貞淑)해야 하는 것이니 그 행실은 반드시 굳어야 합니다. 부모도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것이니, 밝은 태양이 위에서 비치는데 칼과 톱이 어찌 감히 그 마음을 꺾겠습니까. 늠름하여 얼음과 서리처럼 회고 깨끗함이 대장부로서도 쉽지 않은 일을 열부(烈婦)가 한 것은 자못 많습니다.<sup>52)</sup>

위의 내용은 『삼강행실도』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①은 세종이 편찬을 지시하며 하교했던 말이다. 유학자들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고대 하(夏)·은(殷)·주(周) 삼대의 정치가 훌륭했던 것은 모두 맡은 바를 제대로 실천시켜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후세로 내려갈수록 인륜에 어두워져 지금과 같이 혼란한 시기가 찾아왔기에 이를 교화시킬 수단으로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고자 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선정해 책에 수록하여 그림과 설명을 덧붙여 둠으로써 이를 읽고 백성들이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였다. 중앙을 비롯해 지방에까지 보급하여 우매한 민중들을 교육시킴으로서 조선을 이상사회의 반열에 올리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세종의 목적에 맞춰 ②에서는 『삼강행실도』의 구성과 배포 후에 있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③에서는 여성을 바라보는 조선왕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부인은 행실을 바르게 하고 지조를 지켜야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태생부터 정해진 하늘과 땅의 법칙이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던 불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성은 스스로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올곧은 마음으로 어떠한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열부(烈婦)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발미(跋尾)에서도 똑같이

52) 『世宗實錄』 56권, 세종 14년 6월 9일. 竊觀作之君, 作之父, 作之夫則本乎天, 爲之臣, 爲之子, 爲之妻則原於地, 惟天經地義之定理, 無古往今來之或殊. … 女必貞而行必篤. 父母不能奪其志, 昭然天日之照臨, 刀鋸安敢摧其心. 凜乎冰霜之皎潔, 在丈夫而未易, 爲列婦者頗多.



생각하고 있다. 다만 ‘남편을 도우며, 그 친족을 은혜로 하고, 그 가업을 융성하게 하면 능히 정렬을 지키는 것’<sup>53)</sup>이라고 하여 일상생활에서 정(貞)을 행하는 법을 얘기한다. 흔히 죽음으로 대변되는 수절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삼강행실도』의 대다수 사례가 죽음으로 열(烈)을 지키는 여성들을 보여주고 이를 따라 하기 바랐다는 사실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중앙은 물론 지방에까지 반포하였으며<sup>54)</sup>, 이후 언문으로도 제작하여 한문을 모르는 이들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sup>55)</sup> 아래서부터는 앞서 『소학』에서 드러났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삼강행실도』에 기록되어 있는 사례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포소(鮑蘇)가 벼슬살이 가서 다른 여자를 얻으니 본처 여종(女宗)이 시어미를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며, 오고가는 이가 있으면 남편에게 안부하며 첩에게 물건을 많이 보내었다. 여종의 시누이가 이르기를, “떠나가라.”고 하자 여종이 “무엇 때문인가?”라 되물으니, “남편에게 다른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왜 머무르는가?”라고 답하였다. 이에 여종이 말하기를, “여자가 한 번 독좌상을 받으면 바꾸지 않는 법이라, 남편이 죽어도 다른 이 얻지 않으니, 길쌈하며 고치 뽑으며 베 짜 옷 만들며 술 빚으며 음식 만들어 시부모를 섬기며 한결같은으로 곧은 도리를 삼고 착하게 따름으로 순리를 삼는 법인데, 어찌 오로지 사랑하는 것만을 좋은 일로 삼겠습니까? 예(『周禮(주례)』)에서 천자는 열 둘이고 제후는 아홉이며 공경대부는 셋이며 선비는 둘이니, 내 남편이 선비니 두 여

53) 『世宗實錄』 59권, 세종 15년 2월 24일. 婦人動必由禮, 輔其君子, 恩其族屬, 隆其家業, 斯能貞矣.

54) 『世宗實錄』 64권, 세종 16년 4월 27일. 『世宗實錄』 66권, 세종 16년 11월 24일. 『世宗實錄』 84권, 세종 21년 3월 9일. 『世宗實錄』 99권, 세종 25년 2월 15일 등.

55) 『世宗實錄』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최만리의 언문 제작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상소에 반박하기 위해서 새로운 글을 만드는 이유와 효과 중 하나로 민중의 교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언해(諺解)작업을 했던 책들 중에서는 『삼강행실도』도 포함되어 있다.



자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 여자는 일곱 가지 내칠 일이 있고 남자는 하나도 내칠 일이 없습니다. 일곱 가지 내칠 일에 질투가 제일이고 음란, 도둑질, 수다스러움, 교만함, 무자, 악질이 다 그 뒤를 따릅니다. 내 시누이가 예절은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내쫓길 행동을 하게 하니, 장차 무엇에 쓰리오?” 하고, 시어미를 더욱 조심해서 섬기므로, 송공이 듣고 마을 문에 표 세우고 호를 ‘여종(女宗)’이라 하였다.<sup>56)</sup>

위는 여종지례(女宗知禮)로 송나라 시기 여성들 중 으뜸이라는 ‘여종(女宗)’의 호를 받은 사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벼슬에 나가 첩을 얻자 시누이가 본처에게 떠나가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성이 한번 시집을 가면 재가하지 않는다는 것과 『周禮(주례)』에서 선비는 두 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음에 근거하여 이를 거절한다. 그리고 칠거지악을 거론하며 투기(妬忌)가 제일 부덕(不德)한 것인데 어찌 이를 종용하느냐고 되레 다그친다. 남편이 본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시부모와 그 가족을 공경하며 모시고 첩을 투기하지 않아야 된다. 또한, 본래의 마음을 지켜 다른 남성과 연을 맺지 않는 것이 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천자는 열 둘, 제후는 아홉, 공경대부는 셋, 선비는 둘’과 ‘한번의 시집’, ‘칠거지악’과 ‘부무일거(夫無一去)’의 대비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대를 잇고 조상을 모신다는 명목 아래 남성들의 축첩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여성은 한 남자에게만 종속시켜 수절해야 함을 규범화하는

56) 『三綱行實圖』 烈女 女宗知禮. 鮑蘇之妻蘇仕衛三年而娶外妻. 女宗養姑愈敬因往來者. 請問其夫. 賂遺外妻甚厚. 女宗姒謂曰可以去矣. 女宗曰. 何故. 姒曰. 夫人既有所好. 子何留乎. 女宗曰. 婦人. 一醮不改. 夫死不嫁. 執麻枲. 治絲璽. 織紵組紃. 以供衣服. 澌漠酒醴. 羞饋食. 以事舅姑. 以專一爲貞. 以善從爲順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 禮天子十二. 諸侯九. 卿大夫三. 士二. 吾夫士也. 有二不亦宜乎. 且婦人有七見去. 夫無一去義. 七去之道. 妬正爲首. 淫僻. 竊盜. 長舌. 驕侮. 無子. 惡病皆在其後. 吾姒不教以居室之禮.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 將安所用. 事姑愈謹. 宋公聞之. 表其閭. 號曰女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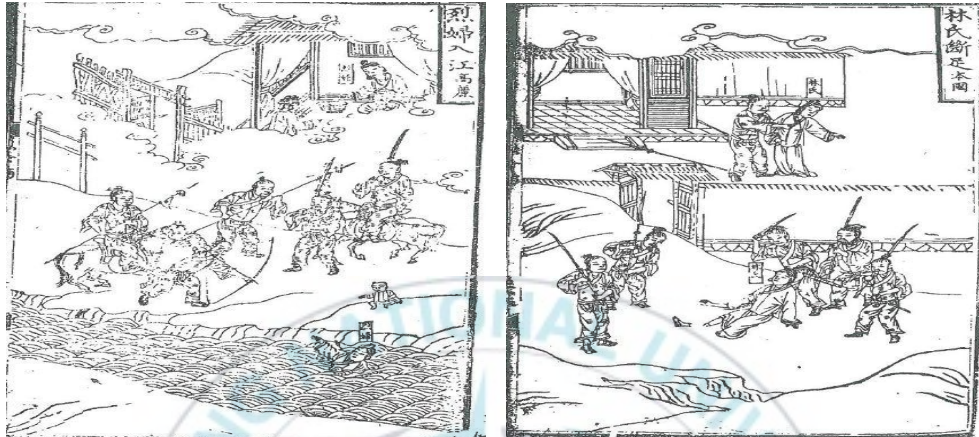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국가가 앞장서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본보기로 추앙하는 것은 성을 통제하고자 했던 작업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을 가정과 한 남편에 종속시켜 남성이 가지는 권위를 높이고 상대적 우위를 자연스럽게 점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시는 『삼강행실도』 속 여성이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가족을 지키는 수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행동을 보이는 사례다. 당대의 시점에서 이를 해석해볼 때 절개와 용기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장려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① 열부 배씨는 경산(京山) 사람으로, 진사(進士) 배중선(裴中善)의 딸이다. 사족 이동교(李東郊)에게 시집을 가 집안일을 잘 다스렸다. 홍무(洪武) 경신(庚申)년에 왜적이 경산을 휩박하여 온 지역을 소요케 하고 노략하니 막을 수가 없었다. 동교가 함포 수막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왜적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이닥쳤다. 배씨가 젓먹이를 안고 달아나니 적이 추격하여 강가에 이르렀다. 아이를 강둑에 놓고 강 속으로 뛰어드니, 왜적이 활에 화살을 먹여 조준하며 말하기를 “이리 온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열부가 돌아보며 꾸짖기를, “어찌 빨리 나를 죽이지 않는가? 내가 어찌 적에게 더럽힘을 당하겠는가?”하였다. 이에 왜적이 활을 쏘아 열부의 어깨를 맞히고, 다시 쏘아 맞히니 열부가 강 속에서 죽었다. 체복사(體覆使) 조준(趙浚)이 이를 상소하여 정문을 내렸다.<sup>57)</sup>

② 임씨는 완산부(完山府) 선비 거(柜)의 딸이다. 낙안군사 최극부(崔克孚)에게 시집을 갔다. 왜구가 본부에서 임씨를 사로잡아 욕보이고자 했다. 임씨가

57) 『三綱行實圖』烈女 烈婦入江. 烈婦, 京山人. 進士裴中善女也. 旣葬. 歸士族李東郊. 善治內事. 洪武庚申. 倭賊逼京山. 闔境擾攘. 無敢禦者. 東郊時赴合浦帥幕. 未還. 賊騎突入烈婦所居里. 烈婦抱乳子走. 賊追之及江. 江水方漲. 烈婦度不能脫. 置乳子岸上. 走入江. 賊持滿注矢擬之曰. 而來免而死. 烈婦顧見賊. 罵曰. 何不速殺我. 我豈汚賊者邪. 賊發矢中肩. 再發再中. 遂歿於江中. 體覆使趙浚. 上其事. 旌表里門.

완강히 거부하니 왜적이 팔 한 쪽을 자르고, 다시 다리 한 쪽을 잘랐으나 굽히지 않고 항거하여 죽임을 당했다.<sup>58)</sup>



<그림1> 烈婦入江(인용 ①)

<그림2> 林氏斷足(인용 ②)

(출처 : 김정수(2010),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9쪽, 211쪽.)

①과 ②는 각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례로 모두 왜적의 침입에 의한 상황과 훼손(毀節)을 막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중기까지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남성과 비슷하였고, 재가에 있어 자유로웠다.<sup>59)</sup>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스스로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서슴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행동은 조선 왕실에서 추구했던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죽음을 강요하기보다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기개와 용기를 칭찬하는 목적으로 『삼강행실도』에 실었다고 보여야 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대다수의 사례가 여성의 신체 훼손과 죽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유책으로 국가차원에서의 포상을 내리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

58) 『三綱行實圖』 烈女 林氏斷足. 林氏, 完山府儒士柅之女也. 適知樂安郡事崔克孚. 倭寇本府. 林被執. 賊欲汗之. 林固拒. 賊斷一臂. 又斷一足. 猶不屈. 被害.

59) 조은(1997), 「모성, 성, 신분제 - 『조선왕조실록』 “재가 금지”담론의 재조명」, 『사회와 역사』 제51권, 109~143쪽.

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림 속에 그려진 여성의 모습도 문제가 있다.<sup>60)</sup>

위 그림의 주인공들은 모두 왜적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열부입장의 경우 화살을 맞고, 임씨단족의 경우 팔과 다리가 한 쪽씩 잘려나간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림에 표현된 여성들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다. 고통을 일부러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그려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개를 표현해 내고자 극적 상황이 오히려 담담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조선왕실에서 추구하던 부덕(婦德)을 표현해 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사실적인 표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여지를 준다. 훼손을 피하기 위해 죽음의 고통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과 여성을 탈성화(脫性化)하는 것을 넘어 그림 속의 열부를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강제 의무를 쥐어주는 것이다.

『삼강행실도』를 통한 잘못된 여성 표본화 작업은 왜란과 호란을 겪고 혼란해진 사회분위기 속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었고, 유학이 민중에까지 자리 잡는 조선후기 이후에 죽음으로 수절을 표하는 열녀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스스로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거짓으로 만들어냈다. ‘열(烈)’을 수행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여론으로 모든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었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sup>61)</sup>

60) 신수경은 의(義)와 예(禮)를 위해 기꺼이 죽어가는 여성의 자부심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수경(2007), 「조선시대 열녀도 양태와 <烈女徐氏抱竹圖>」, 『미술사학연구』 제253호, 132~134쪽.)

61) 강명관은 ‘충·효·열’로 이루어진 책은 결과적으로 윤리를 가장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일화들은 비합리적이고 잔혹함을 드러내는 특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강명관(2002), 「『삼강행실도』- 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권, 5~32쪽.)

### Ⅲ. 두 번째 세자빈의 폐출 : 순빈 봉씨 사건

#### 1. 사건의 전말 : 세종 18년 10월 26일과 11월 7일의 기록

세종대에는 세자빈이 두 번 폐출되었다. 본고에서 다룬 인물은 두 번째로 폐출당한 순빈 봉씨이다. 그녀와 관련한 내용은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 18년 10월 26일과 11월 7일, 두 개의 기록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순빈 봉씨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고 세종이 무슨 근거로 그녀를 쫓아내는지, 즉 어떠한 유교 논리를 가지고 대처하는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요사이 한 가지 괴이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말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럽다. 우리 조종 이래로 가법(家法)이 바로잡혔고, 내 몸에도 미쳐서도 중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년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다.<sup>62)</sup>

62)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近又有一異事, 言之亦可羞恥. 我祖宗以來, 家法克正, 比及予身, 亦賴中宮之助. 中宮極柔嘉, 無妬忌之意, 太宗每稱有樛木逮下之德.



조선 건국 이후 세종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여 기반을 확립해가고 있었다. 국가가 바라는 여성의 모습은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을 잘 돌보는 것이었다. 특히, 왕비는 국모이자 조선의 모든 여성의 모범이 될 사람이었기에 그 도리를 좇아 성품을 닦아야 했다. 세자빈은 장차 왕비가 될 사람으로 마땅히 세자를 잘 보좌하고 자신을 살피야했지만 시아버지의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정도의 일을 벌여 왕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정미년(세종 9년)에 세자가 나이 14세인데 유사(有司)가 “후사를 잇는 일이 중대하므로 빨리 배필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한 까닭으로, 세족인 김씨(휘빈 김씨)를 빈으로 삼았으나 김씨는 정말 어리석고 못나고 총명하지 못하여, 기유년(세종 11년)의 사건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폐하고 봉씨를 간택했다.<sup>63)</sup>

세자(후에 문종)가 14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휘빈 김씨를 세자빈으로 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성품이 바르지 못했고 기유년의 사건으로 쫓겨나게 된다. 결혼한 지 불과 3년만의 일이었다. 해당 사건은 실록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sup>64)</sup> 질투심이 심했던 그녀는 세자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민간에서 성행하던 압승술(壓勝術)을 꾀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세자빈이라는 위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는 자리였다. 어린 나이의 질투로 인한 잘못이 화를 자초한 것이었다. 그래서 김씨를 쫓아내고, 순빈 봉씨가 두 번째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하게 된 것이었다.

63)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歲丁未, 世子年十四, 有司以繼嗣之重, 早立配匹, 故選世族金氏爲嬪, 金氏實愚癡不慧, 以致己酉之事, 故廢之, 更選奉氏.

64) 『世宗實錄』 45권, 세종 11년 7월 20일.



세자가 친영(親迎)한 이후로 금슬이 서로 좋지 못한 지가 몇 해나 되었다. 내가 중궁과 함께 상시 가르치고 타일러서, 그 후에는 조금 대하는 모양이 다르게 되었지마는, 침실의 일까지야 비록 부모일지라도 어찌 자식에게 다 가르칠 수 있겠는가.<sup>65)</sup>

하지만 봉씨가 세자빈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세자와의 금슬이 좋지 않았다. 세종이 이를 타이르고 가르쳐 잠시는 괜찮았으나 이내 비슷해졌다. 왕실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 후사를 보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다른 첩을 두기엔 나이가 어렸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고심 끝에 세종은 대신들과 논의하여 세 명의 승휘(承徽)를 들이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부터 봉씨가 이를 질투하고 문종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 열거되는 내용들은 봉씨의 평소 행실에 있어 문제시 되는 것들인데, 이는 폐출이 되는 이유를 같이 열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세 사람의 승휘(承徽)를 뽑아 들였는데, 봉씨는 성질이 시기하고 질투함이 심하여서 처음에는 사랑을 독차지 못한 일로 오랫동안 원망과 앙심을 품고 있었다. 권승휘(權承徽)가 임신을 하게 되자 봉씨가 더욱 분개하고 원망하여 항상 궁인에게 말하기를, “권승휘가 아들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쫓겨나야 할 거야.”고 하였다. 때로는 소리내어 울기도 하니, 그 소리가 궁중에 까지 들리었다. 내가 중궁과 같이 봉씨를 불러서 타이르기를, “네가 매우 어리석다. 네가 세자의 빈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데, 권승휘가 다행히 아들을 두게 되었으니 인지상정으로서 기뻐할 일인데도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니 또한 괴아하지 않은가?”라고 했으나, 봉씨는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sup>66)</sup>

65)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世子自親迎以後, 琴瑟不諧者有年, 予與中宮 常加誨諭, 然後雖稍存接對之形, 然衽席之上, 雖父母豈能盡得之於子乎.

66)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因此選入三承徽. 奉氏性甚忌妬, 當初以

봉씨는 자신을 두고 세 사람의 후궁을 들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세자가 오롯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에 원망심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권승휘(權承徽)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신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며 불안감이 극에 다다랐으며, 때때로 소리 내어 울며 왕실을 시끄럽게 하였다. 세종은 이를 훈계하고자 봉씨를 불러 “네가 대를 잇지 못하니 아들을 낳게 되면 인지상정으로 좋아해야 할 일이다.”라며 직접 타일렀다. 그러나 봉씨는 뉘우치지 않았다. 시부모의 가르침을 듣고도 행동을 고치는 바가 없었으니 이는 불순(不順)이었고, 남편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심한 질투를 보였으니 이는 투기(妬忌)였다. 칠거지악 중에서 이미 두 가지가 해당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폐출의 주요 계기는 아니었다.

세자의 의복·신·띠 등의 물건을 몰래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고, 또 속옷·적삼·말균(襪裙) 등을 여자 의복으로 고쳐 만들어 그 어머니에게 보냈었다. 나는 그가 어버이를 위한 것이라 하여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세자의 속옷 따위로 어버이의 의복을 할 수 없다는 것만 꾸짖었을 뿐이었다. … 또 궁중에 쓰는 물건과 음식물은 그 나머지를 덜어서 어머니의 집에 보내자고 청하였다가 세자가 옳지 않다고 하자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어버이에게 보내므로 이를 금지시켰더니, 그 후에는 환자들을 몰래 경계하여 세자에게 절대로 아뢰지 말고 보내게 하였다.<sup>67)</sup>

不甚見愛，久懷怨惡，及權承徽有娠，奉氏尤憤恨，常謂宮人曰，權承徽有子，吾輩當斥退矣。有時哭泣，聲聞宮中。予與中宮召而諭之曰，汝甚愚昧。汝爲世子之嬪而無子，承徽幸有子，常情所喜，而反有怨心，不亦異乎，奉氏略無悔色。

- 67)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潛取世子衣服靴帶等物，送父家，又取裏衣衫裙等，改爲女服，以送於母。予以其爲親，故勿咎，但責褻衣裳不可以爲親之衣服而已。… 又宮中供用物膳，請除其贏餘，送於母家，世子以爲不可以己之餘膳遺親禁之，其後密戒宦寺，慎勿稟於世子而送之。

봉씨는 궁중의 물건을 함부로 자신의 집안으로 반출하고 있었다. 세자의 물건을 몰래 아버지에게 보내고, 때때로 속옷·적삼 등의 의복을 여자 의복으로 개량하였다. 또한 음식의 일부를 덜어 보내기를 청하였다가 세자에 의해 제재당한 후로는 들키지 않기 위해 아뢰지 않고 보내었다. 세종 역시 이를 알고 꾸짖었지만, 그 아비를 위한 것이라 여겨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주었다.

왕실의 물건을 함부로 반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신료들에게 하사한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유재산으로서 함부로 개인이 사고 팔거나 줄 수 없었다. 『大明律直解(대명률직해)』의 283조는 내부(內府)의 재물을 훔치는 것에 대한 법률이다.<sup>68)</sup> 내부의 재물을 훔치면 모두 참형으로, 임금의 인신 및 왕부 안으로 진상한 입고 쓰는 재물 등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sup>69)</sup> 그녀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행동한 것이다. 즉, 절도(竊盜)에 해당되는 것이다. 실제 법을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나, 세자빈이라는 위치에 있어 화를 면했다고 볼 수 있다.

봉씨가 스스로 말하기를, “신기(娠氣)가 있다.”하여, 궁중에서 모두 기뻐하였다. 그가 혹시 놀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중궁으로 옮겨 들어와서 조용히 거처한지 한 달 남짓했는데, 어느 날 봉씨가 또 말하기를, “낙태(落胎)를 하여, 단

68) 『大明律直解』 제18권 刑律 盜賊 283조, 盜內府財物. 御印及王府內進上服御財物等乙 偷取者 斬.

69) ‘內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황성 안을 가리키는 말로, 내(內)는 궁궐의 안, 부(府)는 간직하는 곳으로 궁궐 안의 모든 곳을 지칭한다. 둘째는 황제의 창고를 가리키는 말로 황성의 금지(禁地)이다. 해당 항목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大明律直解』 283조, 주D001 참조. 2021.05.07. 접속. [http://db.itkc.or.kr/inLink?DCI=ITKC\\_GP\\_1461A\\_0190\\_010\\_0070\\_2019\\_001\\_XM](http://db.itkc.or.kr/inLink?DCI=ITKC_GP_1461A_0190_010_0070_2019_001_XM) L)

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늙은 궁궐 여종으로 하여 가서 보게 했으나,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으니, 그가 말한 임신은 거짓말이었다.<sup>70)</sup>

세종은 봉씨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마음 둘 곳이 세자밖에 없는데, 세자가 학문에만 몰두하고 그녀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행동과 여러 승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함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래서 세자에게 “여러 승휘가 있지만은, 정적(正嫡)에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sup>71)</sup>라며 봉씨를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때부터 세자가 우대하는 예절을 보였더니 얼마 후에 봉씨가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얘기하였다. 왕실에서는 이를 반겨 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녀의 거처를 중궁으로 옮겨주었다. 하지만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유산(流産)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침소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세자와 왕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거짓으로 임신했다고 고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세자의 생일에 맞춰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여 지난해에 준 것을 새로 마련한 것처럼 속여 바쳤다.<sup>72)</sup> 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노제(路祭)를 대신 맡아준 당고부(堂姑父) 송기(宋頎)에게 즉시 호슬(護膝)을 주어 사례하고는 세자에게 아뢰지 않았다.<sup>73)</sup> 그리고 궁궐 여종들로 하여금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sup>74)</sup> 다른 남성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 세

70)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奉氏自言有娠氣, 宮中皆喜, 慮有驚恐, 徙入中宮靜處者月餘. 一日, 奉氏又自言落胎云, 有硬物成形而出, 今在衣衾中. 使老宮婢往視之, 衣衾中無所見, 則其言懷孕, 妄也.

71)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雖有諸承徽, 然豈如正嫡有子之尤貴乎.

72)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又嘗手作宦寺護膝囊帑等物. 緣此世子生辰例獻之物, 無暇預造, 潛取往歲生辰已進舊物, 冒爲新備以給進.

73)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當其父喪, 私送人於堂姑夫宋頎, 使掌路祭, 後宋頎書行祭族親姓名, 私謁於奉氏, 奉氏即遣護膝以謝之, 皆不關白於世子.

74)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又常使宮婢唱悅男之歌.

자를 지칭하여 그의 관심을 사고자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해 세자가 종학(宗學)에 옮겨 거처할 때에, 봉씨가 시녀들의 변소에 가서  
틈으로부터 외간 사람을 엿보았었다.<sup>75)</sup>

하지만 이러한 실덕(失德) 이외에 세종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있었다. 봉씨가 시녀들의 변소에 가 틈으로 사람들을 엿보는 행동이  
었다. 이는 누군가의 이목을 끌기 위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비록 그녀  
가 세자의 환심을 사고자 했으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외  
간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녀는 변소에서 같은 성(性)의 사람을  
훑쳐보고 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오래지 않아 궁중에는 봉씨가 소쌍(召雙)  
이라는 궁녀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세자빈이 동성애(同性愛)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요사이 들건대, 봉씨가 궁궐의 여종 소쌍이란 사람을 사랑하여 항상 그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궁인들이 혹 서로 수군거리기를, “빈께서 소쌍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고 하였다. 어느 날 소쌍이 궁궐 안에서 소제를  
하고 있는데, 세자가 갑자기 묻기를, “네가 정말 빈과 같이 자느냐?”고 하니,  
소쌍이 깜짝 놀라서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였다. 그 후에도 자주 듣  
건대, 봉씨가 소쌍을 몹시 사랑하여 잠시라도 그 곁을 떠나기만 하면 원망하  
고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였다. 소쌍도 다른 사람에게 늘 말하기를, “빈께서 나  
를 사랑하기를 보통보다 매우 다르게 하므로, 나는 매우 무섭다.” 하였다. 소  
쌍이 권승희의 사비(私婢) 단지(端之)와 서로 좋아하여 혹시 함께 자기도 하

75)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又曩歲世子移處宗學之時, 奉氏往侍女  
溷廁, 從壁隙窺伺外人.



었는데, 봉씨가 사비 석가이(石加伊)를 시켜 항상 그 뒤를 따라 다니게 하여 단지와 함께 놀지 못하게 하였다.<sup>76)</sup>

이러한 소문이 커지자 세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쌍에게 직접 물었고, 동침한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봉씨와 소쌍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궁중에서 돌고 있었다. 봉씨는 소쌍이 자신과 떨어져 있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녀가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소쌍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 소쌍은 그러한 현실이 무서웠고 이를 주변에도 말하여 알렸으나, 세자빈이라는 직위에 있는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중요한 점은 두 사람만이 위인 관계가 아니라 권승희의 사비(私婢)인 단지(端之)라는 인물이 또 있다는 것이다. 소쌍과 단지는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봉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둘 사이를 방해하고자 자신의 사비 석가이(石加伊)를 시켜 같이 있지 못하게 갈라놓으려 했다. 궁녀 간의 동성애도 문제가 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세자빈이 위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며 왕실에서 가만둘 수 없었다. 이에 세종은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직접 하문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궁중에서 자못 떠들썩한 까닭으로, 내가 중궁과 더불어 소쌍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으니 소쌍이 말하기를,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억박지르므로

76)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近聞奉氏愛一宮婢召雙者, 常不離左右, 宮人或相言, 嬪與召雙常同寢處. 一日, 召雙灑掃宮內, 世子忽問, 汝信與嬪同寢乎. 召雙愕然對曰, 然. 其後頗聞奉氏酷愛召雙, 暫離左右, 則恨恚曰, 我雖甚愛汝, 汝則不甚愛我. 召雙亦常謂人曰, 嬪之愛我, 頗異於常, 我甚惶恐. 召雙又與權承徽私婢端之相好, 或與同寢, 奉氏以私婢石加伊, 常隨其後, 使不得與端之同遊.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하였다. … 이에 빈을 불러서 이 사실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소쌍이 단지와 더불어 항상 사랑하고 좋아하여, 밤에만 같이 잘 뿐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헛바닥을 뺄았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의 하는 짓이오며 저는 처음부터 동숙한 일이 없었습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매우 명백하니 어찌 끝까지 숨길 수 있겠는가. 또 저들의 목을 맞대고 헛바닥을 뺄았던 일을 또한 어찌 빈이 알 수 있었겠는가. 항상 그 일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면 그 형세가 반드시 본받아 이를 하게 되는 것은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머지 시중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것과 벽 틈으로 엿본 따위의 일은 모두 다 자복하였다.<sup>77)</sup>

소쌍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빈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여종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옷을 반쯤 벗고 들어가니, 강제로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눕혀 남자와 여자가 교합하는 형상처럼 서로 희롱하였다는 것이다. 기사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침소에서 정확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적인 행위를 두 여성이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소쌍의 대답에 놀란 세종은 빈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녀는 소쌍과 단지가 사랑하는 사이로 낮에도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았고 밤에도 같이 동침하는 것을 알 뿐, 자신과는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하지만 여종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것과 변소의 벽 틈으로 엿

77)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此事頗喧於宮中, 故予與中宮召召雙而問其狀, 召雙言, 去歲冬至, 嬪夜召我入內, 他婢皆在戶外, 要我同宿, 我辭之, 嬪強之, 不得已半脫衣入屏裏, 嬪盡奪餘衣, 強使入臥相戲, 有如男子交合狀. … 乃召嬪而問之, 答曰, 召雙與端之, 常時愛好, 不獨夜同寢宿, 晝亦交頸砥舌, 此乃彼之所爲, 我則初無同宿之事. 然諸證甚明, 豈能終諱. 且彼人交頸砥舌之事, 亦豈嬪之所宜知乎. 常見其事而歆羨, 則其勢必效而爲之, 益無疑矣. 其餘使侍婢唱歌及窺壁隙等事, 悉皆自服.

본 일 등을 자복하였고, 세종은 여러 증거들과 정황상 봉씨 또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자에게 얻고자 했던 사랑에 대한 갈구는 오래지 않아 원망이 되었다. 그 상황 속에서 벽 틈으로 엿본 소쌍과 단지의 애정행각은 부러움과 동시에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줄 새로운 창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소쌍을 자신의 상대로 만들려고 하였다. 신분적 차이를 이용하여 같이 잠을 자고, 애정행위를 하려 했으나 이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사랑에 불과했다. 봉씨의 잘못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동성애로 표출되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세종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서 궁중에서 쫓겨나게 된다.

## 2. 세종의 폐빈 논리 : 유교 논리의 구현

세종은 두 번의 교지를 내려 봉씨를 내쫓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18년 10월 26일의 기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세종의 인식과 그 처벌을 확인할 수 있다.

봉씨가 궁궐의 여종과 동숙한 일은 매우 추잡하므로 교지에 기재할 수는 없으니, 우선 성질이 질투하며 아들이 없고, 또 노래를 부른 네댓 가지 일을 범죄 행위로 헤아려서, 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속히 교지를 지어 바치게 하라.<sup>78)</sup>

세종은 세자빈 폐출에 관련한 교지에서 동성애라는 중요 사건을 배제하

---

78)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奉氏與宮婢同宿之事極醜, 不可載於教旨, 姑以性妬無子, 又唱歌等四五事數之, 與三大臣同議, 速製教旨以進.

고 지으라고 명했다. 기록에 남기지 않고자 동성애 대신에 첼거지악을 근거로 삼았다. 세종은 궁녀와 동숙한 일이 매우 추잡한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 세종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항상 듣건대, 시녀와 종비(從婢) 등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므로, 이를 매우 미워하여 궁중에 금령을 엄하게 세워,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살피는 여관이 아뢰어 곤장 70대를 집행하게 하였고, 그래도 능히 금지하지 못하면 혹시 곤장 1백 대를 더 집행하기도 하였다. 그런 후에야 그 풍습이 조금 그쳐지게 되었다.<sup>79)</sup>

궁인들 사이에서의 동성애는 세종도 항상 듣던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녀들의 생활을 감시하는 여관(女官)을 두었고, 적발 시에는 장 70대를 집행했다. 만약 한 번 걸렸던 이가 다시 적발된다면 장 100대로 형을 높여 처벌하는 금령(禁令)을 만들어 동성애를 금지하고자 했다. 고려시대에도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었으나 조선시대 때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이 평등하였고, 성(性)의 표현에 있어 제한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유교를 전면으로 내세운 조선 건국 이후로는 주자학(朱子學)을 기초로 바로잡고자 했다.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 여성에 대한 규제와 종속성의 강화 등이었다.

이때는 『소학』과 『삼강행실도』의 보급을 통해 민중을 교화하고 유교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던 시기였다. 왕실 내에서 동성애는 허락될 수 없는 모순과도 같았다. 음과 양의 올바른 조화가 아닌 같은 성별끼

79)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予常聞侍女從婢等私相交好, 與同寢處, 甚惡之, 宮中嚴立禁令, 有犯者, 司察之女即啓, 決杖七十, 猶不能禁止, 則或加杖一百, 然後其風稍息.

리의 교합은 이치에 반(反)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장형(杖刑)을 내세워 범하는 이가 없도록 하였다. 한 번 적발된 인물이 이후에도 동성애를 행하는 경우들이 있었기에 형(刑)에 차등을 만들어두었다. 세종 이전 시기의 『조선왕조실록』에서 관련한 기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궁인들 사이의 동성애는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져 왔던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종대에 들어와 세종이 동성애를 미워했고 왕실 내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령을 세워 궁중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이 법령을 토대로 이후의 왕들도 똑같이 처벌하였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후대에도 이어 갈 하나의 선례(先例)를 만든 것이다. 다음은 11월 7일에 봉씨 폐출에 대하여 대신들에게 부연설명을 하는 세종의 말이다.<sup>80)</sup>

80) 10월 26일의 기사에 경우 앞의 전말에서 언급한 것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각주에 두고 넘어가고자 한다. “저부(儲副)는 한 나라의 근본이요, 배필은 삼강의 중대함이니, 처음을 바로잡는 도리는 삼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유년에 봉씨를 명가의 후손이라 해서 세자빈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규곤(閨壺)의 의칙(儀則)을 어길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우선 그 대개만 들어 말한다면, 성질이 투기가 많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며, 또 궁궐 여종들로 하여금 항상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또 세자가 종학으로 옮겨 가 거처할 때에 몰래 시녀의 변소에 가서 벽 틈으로 엿보아 외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환자의 주머니·자루·호슬을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세자의 생신에 으레 바쳐야 할 물건들을 미리 만들 여가가 없어서, 지난해 생신에 쓴 오래 된 물건을 몰래 가져다가 새로 마련한 것처럼 속이고 바쳤으며, 또 궁중에 쓰는 물건과 음식물을 세자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몰래 환자를 경계하여 그 어머니 집으로 보내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이 모두 애매한 것이 아니므로, 내가 친히 사유를 물으니 모두 다 자복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부부의 도리는 풍화의 근원이요, 빈을 폐하고 다른 빈을 다시 세우는 것은 역대에서 소중히 여기는데, 더군다나 지금 세자빈은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하니, 더욱 사람들의 시청을 놀라게 할 것이다. 다만 총부의 직책이 관계한 바가 경하지 않는데, 이러한 실덕이 있으니 어찌 세자의 배필이 되어 종묘의 제사를 받들고, 한 나라에 국모의 의표가 되겠는가. 이에 마지못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여 종묘에 고하고, 그 책인(冊印)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다만 그대들 정부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에 효유(曉諭)할 지어다.”

근일에 폐위한 세자빈의 실덕한 일이 매우 많은데, 내가 낱낱이 들어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전에 교지를 내려 다만 몇 가지 일만 한 나라의 국모로서의 의표에 진실로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을 뿐이다. 다만 왕후를 폐하고 아내를 내쫓는 것은 예로부터 삼가는 바이니, 진실로 인륜의 근본이므로 경솔히 바꿀 수 없는 까닭이다. 하물며 지금 세자는 전에 김씨를 폐했는데 또 봉씨를 폐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아마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능히 자기 몸을 반성하지 못하면서, 다만 털을 붙여 헤치고 남의 허물만을 찾아내려고 애써서 폐척(廢斥)을 잘 행한다.”고 할 것이다.<sup>81)</sup>

세종이 대신들에게 다시 한 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폐빈의 경우 신중해야하고 예로부터 삼가는 이치였으나, 세자빈을 벌써 두 번이나 폐출하였기 때문이다. 김씨와 봉씨뿐만 아니라 세자와 세종에게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낸 거라 생각할 것을 염려했다. 자신의 집안을 올바르게 돌보지 못했다고 말이다.

두 번째 교지의 성격은 동성애를 제외하고 봉씨의 잘못된 점을 소상히 밝히는 목적과 동시에 폐빈 이전까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종과 세자가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세종이 “봉씨의 어리석음은 비록 부지런히 가르쳤지마는 마침내 고치고 뉘우치는 뜻이 없었다. 전번에 대략 그 대강을 설명했지마는 나머지 일들을 언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또 이를 다 말하게 되니 마땅히 이를 함께 알아야 될 것이다.”<sup>82)</sup>라고 언급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종의 교지에서 유교 논리가 어떻게 구현되

81)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敎曰, 近日所廢世子嬪失德之事甚多, 予不欲枚舉而顯言之, 故前下敎旨, 只舉數事, 誠不合母儀於一國, 但廢后黜妻, 自古所謹, 誠以人倫之本不可以輕易故也. 況今世子, 前廢金氏, 又廢奉氏, 是在予與世子不能身率正家所致, 恐國人之議以爲. 不能反己, 徒務吹手求疵, 好行廢斥也.

82)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奉氏之愚, 雖勤敎誨, 終無改悔之意. 前者略設大概, 而未及餘事, 今且盡言之, 宜共知之.



는지 하나씩 들여다보자.

처음에 김씨를 폐하고 봉씨를 세울 적에는, 그에게 옛 훈계를 알아서 경계하고 조심하여 금후로는 거의 이런 따위의 일을 없게 하고자 하여, 여사(女師)로 하여금 『烈女傳(열녀전)』을 가르치게 했는데, 봉씨가 이를 배운 지 며칠 만에 책을 뜯어 던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하면서, 학업을 받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열녀전』을 가르치게 한 것은 나의 명령인데도 감히 이같이 무례한 짓을 하니, 어찌 며느리의 도리에 합당하겠는가. 또 생각하기를, 부인이 반드시 글을 배워서 정사에 간여하는 길을 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여, 다시 그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다.<sup>83)</sup>

세종은 봉씨를 두 번째 세자빈으로 맞았을 때, 휘빈 김씨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빈으로서,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을 알려주려고 했다. 그래서 여사를 두어 『烈女傳(열녀전)』을 가르치게 하였다. 『열녀전』에는 남편을 보좌하고 가정을 율곧게 만들기 위해 여성의 순종과 내조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봉씨는 그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찌 이를 배우고 생활하겠는가?”라며 학업을 거부하였다. 이는 국왕이자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한 것으로 칠거지악 중 하나인 불순(不順)에 해당된다. 며느리는 삼종(三從)의 도(道)로서 지아비를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예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었고, 세종도 꽤 씩씩 여겨 학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정사에 간섭할 수 없도록 경계하였다. 만약 그녀가 글을 배우게 된다면 향후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국정(國政)을 방해하

83)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初廢金氏而立奉氏也, 欲其知古訓而戒飭, 自今以後, 庶無此等之事, 使女師授『烈女傳』. 奉氏學之數日, 乃投冊於庭曰, 我豈學此而後生活乎. 遂不肯受業. 授『烈女傳』, 予之教也, 而敢如此無禮, 豈合子婦之道乎. 又意婦人不必要學文字, 開干政之門, 故不復使教之.



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① 또 세자의 유모가 죽었으므로 이름이 고미(古未)라고 한 늙은 궁궐 여종으로 하여금 궁중의 일을 대신 맡게 했다. 봉씨가 밤마다 고미를 불러 말하기를, “할미는 어찌 내 뜻을 알지 못하오.” 하니, 대개 이 노파로 하여금 세자를 불러 오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떳떳한 정리이지마는, 그러나 부인이 남편을 잃어도 밤에 울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혐의를 피하는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군다나 매일 밤마다 세자를 보고자 하니, 어찌 부인의 도리에 적합하겠는가. 또 세자가 오랫동안 밖에 옮겨가 있다가 돌아와서, 궁궐에 들어와 뜰을 돌아다니며 구경하였는데, 빈의 궁에 가까이 이르니, 봉씨가 지계문으로 바라보고 말하기를, “저 분이 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공연히 밖에서 걷고 있을까” 하면서, 자기 있는 곳에 들어오기를 바랐으니, 이것도 또한 상스러운 일이다.<sup>84)</sup>

② 내가 중궁과 함께 항상 세자를 가르쳐서 마땅히 빈궁을 접대하도록 했는데, 세자가 며칠 동안 왕래하였다가 그 후에 드물게 가매, 봉씨가 노래를 지어 궁궐의 여종으로 하여금 이를 부르게 하니, 그 대개는 세자를 사랑하는 내용이었다.<sup>85)</sup>

왕실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후보에 오른 다수의 여성들이 총 세 번의 간택을 거치며 삼간택(三揀擇)에서 최종으로 선발되는 인물만이 입궁할 수 있었다. 왕세자와 세자빈의 초혼 연령은 대개 10살 전후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가례만 치르고 몇 년이 지난 후 성

84)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又世子乳媼死, 使老宮婢名古未者代幹宮事. 奉氏每夜呼古未曰, 媼何不識吾之意乎. 蓋欲此媼呼世子而來也. 夫婦相愛, 雖其常情, 然婦人喪夫, 不夜哭, 無他, 避其嫌也, 而況每夜欲見, 豈合婦人之道乎. 又世子久移於外, 還入宮巡視庭宇, 近至嬪宮, 奉氏自戶望見曰, 彼何不入內, 而空步於外乎. 庶幾入此. 是亦可鄙也.

85)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又予與中宮常教世子, 當接待嬪宮, 世子數日往來, 其後又稀往, 奉氏作歌, 使宮婢唱之, 其大概, 愛悅世子之辭也.

년이 된 이후에 합방을 치렀다.<sup>86)</sup> 그렇기 때문에 빈으로 간택 받은 이후에도 왕실 및 부인의 예를 배우며 궁중 생활에 적응하고 유대관계를 쌓아야 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였다. 왕실의 혼인 목적은 종묘를 받들고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실(正室)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덕목이었다. 후사를 잇기 위해서는 왕실에서 규정한 합방례(合房禮)를 따라 간택된 날짜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그래야만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서 좋은 기운을 받아 성군(聖君)이 될 것이라 믿었다.<sup>87)</sup>

하지만 봉씨는 세자의 유모인 고미(古未)를 밤마다 불러 세자가 자신의 침소로 건너오도록 하려 했다. 부부사이기에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상당히 문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 세종도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떳떳한 정리지만, 매일 밤마다 세자를 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부인의 도리에 적합하겠는가?”라며 잘못된 일임을 지적한다. 또한, 세자가 오랜만에 돌아와 궁궐의 뜰을 돌아다니자 왜 자신에 방에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해 의아해하는 것 역시 상스러운 일이라며 부인된 도리에 어긋난 것을 애기한다.

②에서는 세자를 사랑하는 노래를 궁인들에게 부르도록 한 일이다. 이 또한 예를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다. 세자와의 관계가 좋고, 궁 안의 사람들 모두가 그를 부러워하는 상황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자와 빈의 금슬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좋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스스로의 덕을 쌓지 않으면서 지아비만을 기다리는 일은 세자빈의 직책을 가진 그녀에게 실덕(失德)이자, 음(淫)을 드러내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세종은 그녀의 음란하고 어리석

86) 신명호(2002),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돌베개, 98쪽.

87) 신명호(2002), 앞의 책, 105쪽.

은 행동을 문제시 삼은 것이다.

①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으로 연거푸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며, 혹 어떤 때는 시중드는 여종으로 하여금 업고 뜰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혹 어떤 때는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하며, 또 좋은 음식물을 얻으면 시렁 속에 갈무리해 두고서는, 손수 그릇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먹고 다시 손수 이를 갈무리하니, 이것이 어찌 빈이 마땅히 할 것이겠는가.<sup>88)</sup>

② 또 그 아버지가 죽은 초기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이를 두었다가 그 어머니 집에 보내므로 세자가 알고 이를 금지시키니, 그 술을 모두 안으로 들여오게 하고 말하기를, “이 술은 내 몫인데 이미 이것을 집에 보내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내가 스스로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상이 1백 일을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상시와 같이 술을 마시었다.<sup>89)</sup>

봉씨는 술을 즐겨하여 항상 자신의 방에 준비해 두고 마셨다. 혹여 모자라는 경우에는 집에서 몰래 가져와 숨겨놓았다. 몹시 취할 정도로 마셨기에, 주사(酒邪) 역시 좋지 못하여 여종의 등에 업혀 뜰을 다녔다. 술과 함께 먹을 음식물들은 감춰두었다가 혼자 몰래 꺼내어 먹기도 하였다. 세자빈이 애주가(愛酒家)인 것도 문제가 되나, 좋은 음식을 숨겼다가 탐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늘 염려하며 생활해야 했다. 그리고 시부

88)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性嗜酒, 常置酒於房中, 好以大器連飲泥醉, 或使侍婢負而行庭中, 或酒乏則私取於家而飲之. 又得好食物, 則藏於庋閣中, 自出器中而食之, 復自藏之, 此豈嬪之所宜爲乎.

89)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又父死之初, 不飲酒而畜之, 送於母家, 世子知而禁之, 則使盡入於內曰, 此酒, 我之分裏, 既不得送之於家, 則當自飲之. 喪不過百日, 而飲酒如常.

모와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여 움직여야 했다. 그렇기에 좋은 물건, 좋은 음식 등을 얻게 되면 먼저 그것을 알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물어본 다음 행동해야 했다. 그것이 며느리 된 여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사였다. 하지만 봉씨는 좋은 음식물이 생기면 갈무리하여 혼자만 이득을 챙기는 면모를 보였다. 시아버지인 세종의 눈에는 상당히 괘씸한 것이었다. 시부모를 공경으로 모시지 않는 행위로서 받아들여지기에 불순으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②에서 알 수 있듯,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상례(喪禮)에 따라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가지고 있던 술을 몰래 어머니에게 보내었다. 궁중의 물건 내지 음식을 밖으로 보내는 것은 절도(竊盜)이므로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됐다. 세자가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니 봉씨가 “스스로 마셔야 되겠다.”고 하며 상(喪)이 채 백여 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평소와 같이 술을 마셨다. 자신을 길러준 부모의 죽음에 통탄하여 음식을 전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적으로 보일 상황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제 부모에 대한 불효(不孝)이자 불경(不敬)이었다. 자식된 도리마저 저버리는 모습에 세종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였다.<sup>90)</sup>

또 궁중이 궁인을 대우하는데 매우 은혜와 예절이 있었으므로, 궁인이 죄가 있으면 몸소 책망하거나 벌주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 아뢰어 이를 결정하였는데, 봉씨는 여러 번 투기 때문에 몸소 궁인을 구타하여 혹 어떤 때에는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니 어진 부인이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sup>91)</sup>

90) 정성희의 단행본에는 봉씨가 폐출된 이후, 집에 도착하자 그의 아버지인 봉여(奉礪)가 자신의 허리띠로 목매달아 자살시켰음을 얘기한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봉씨의 아버지는 폐출되기 이전 사망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사실임을 인지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정성희(1998), 앞의 책, 280~281쪽.)

91)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且中宮待宮人甚有恩禮, 宮人有罪, 不自責罰, 必啓予而決之. 奉氏屢因妬忌, 自歐宮人, 或至幾死, 賢婦人固若此乎.

왕비는 궁궐의 안주인으로 내명부를 비롯해 궁중의 여성들을 통솔하는 인물이다.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면 왕비의 명에 따라 궁인들을 처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문제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사뭇 귀찮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왕실은 국가이자 조선의 모든 가정의 대표다. 직위를 떼어내고 본다면 한 집안의 세종은 가장(家長)이다. 그의 아내였던 소헌왕후 심씨의 경우에는 궁인을 벌할 때 자신에게 물어 그들의 죄를 함께 논의한 이후에 결정하였다. 궁중 내의 질서, 즉 가정의 예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모습은 가장에게 문제를 보고한 이후에 결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봉씨의 경우는 달랐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궁인들을 구타하고 괴롭혔다. 행여 스스로 처리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웃어른에게 여쭙보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세자빈으로서 적절한 처사였다. 그러나 지아비나 시부모에게 여쭙보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한 것은 어찌 보면 가정 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숙(貞淑)함과도 거리가 멀었다. 투기(妬忌)는 칠거지악의 하나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가 인정되었던 조선에서 남자는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었다. 세자빈도 예외는 아니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궁이 아들이 낳았을 때, 이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향후의 세자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여야만 했다. 그녀가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세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기에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의 질투는 금지항목이었다. 그렇기에 세자빈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자 내쫓을 수 있는 근거였다.



시골의 여자로 궁중에 들어왔으니, 마땅히 공손하고 잠잠하여 자기 몸을 지켜 경계하기에 여가가 없을 것인데도, 교만하고 무례함이 이와 같았다. 세자가 항상 말하기를, “내가 그를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후(呂后)라도 또한 능히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그 말이 아마 거짓은 아닐 것이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전일에는 미처 말하지 못했지마는, 그대들은 마땅히 이를 알아야만 될 것이며, 또 세 대신들에게 전해 말하여 내가 마지못하여 세자빈을 폐출하는 뜻을 알리기 바란다.<sup>92)</sup>

세자빈이라는 직책에 맞게 종부(宗婦)의 예절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교만하고 무례하였다. 어린 나이에 왕실의 규범과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감안하더라도, 그녀가 보였던 행동들은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었다. 세자 역시 자신이 빈을 총애하게 되면 그 권세에 힘입어 더욱 흉포해질 것이라 여기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도 이에 동의하여 동성애를 제외하더라도 빈이 보인 행동에서 실덕을 찾아 폐출시키고, 합당한 처사였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세자빈 폐출과 관련한 두 개의 교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봉씨의 평소 행실에서 보였던 추태가 부덕(婦德)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행동들은 부인을 내쫓는 근거가 되는 칠거지악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봉씨의 폐빈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유는 불순, 음란, 투기, 절도 네 가지 항목이다. 무자(無子)의 경우에는 두 번의 교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92)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以鄉村之女, 入來宮禁, 當恭默自守, 儆戒無暇, 而乃偃蹇無禮若此. 世子常稱, 我寵愛, 則妬虐悍鷙, 雖金刃, 亦且不擇. 若其得志, 則古之呂后, 亦不能過也. 其言殆非虛妄. 凡此數事, 前日未及說, 若等當知之, 又可傳說三大臣, 庶知予不獲已廢黜之意.



있지는 않으나, 이 조항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왕실에서 대를 잇는 후사가 있고 없음은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봉씨 아버지의 상(喪)과 관련해서는 불효와 불경의 논리가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봉씨의 폐출 이후에 소쌍과 단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가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이 ‘동성애는 추잡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관련 내용을 사료의 기록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궁녀 간의 동성애에 대한 금령에 따라 소쌍과 단지는 장 70대의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3. 『大明律直解(대명률직해)』 범간조(犯奸條)와의 비교 및 의의

『大明律直解(대명률직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선 유교의 형벌 적용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 조선의 유학자들이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예(禮)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통치되기를 바랐다. 예치(禮治)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국가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때문에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가 각자의 지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었다. 이것은 유교의 도덕사상의 기본이 되는 삼강(三綱)이다. 이와 더불어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라는 다섯 가지 인륜(人倫)이 있었다.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몇몇한 도리이자 질서였다. 이러한 것들을 개개인이 습득하여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도(道)를 따랐을 때 국가는 이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상향이었을 뿐이었다. 모든 구성원들이 유학의 도를 공부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마찰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었다.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또한 형벌을 두어 잘못된 행동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했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였다.

유교의 예는 분별(分別)이었다. 1차적으로는 남녀로 구분되는 성별의 구별이 있다. 주지하듯이 유학은 남성 중심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여성의 역할과 행동에 제약을 걸어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의 『소학』과 『삼강행실도』 열녀편을 통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통제하고자 했었는지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 2차적으로 신분에 따른 구별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봉건 계급 사회로 왕족, 양반으로 통칭되는 사대부, 서민(農·工·商), 노비로 구분되었다. 자신에게 맞는 계급에 따라 요구되는 덕목도 달랐고, 형벌의 처벌에서도 차등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그 차등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실제적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禮記(예기)』 곡례상제일(曲禮上第一) 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자는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sup>93)</sup>라 말했다. 예는 서인에게 내려가지 않고 형(刑)은 대부에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말은 유교의 대원칙 중의 하나로서 국가의 운영에 있어 윤리적인 행동을 누구에게까지 요구했

---

93) 『禮記』, 曲禮上第一.

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제왕(帝王)-공경사대부(公卿士大夫)-서인(庶人)-천민’의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제왕과 공경사대부의 경우는 예로서, 서인과 노비는 형으로서 다스려졌다.

조선시대로 적용했을 때 그 대상은 왕족과 장차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양반들이었다. 조선의 왕실과 사대부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로써 경전 공부에 힘쓰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윤리강령과 사회전반의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그 대가로 형벌 처우에 있어 예의를 갖추어주었다. 일반 백성들과 천민 신분의 사람들에게는 요구 및 적용되는 예가 없었기에 형벌로 다스려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의 적용에 있어 여성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한다.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예라는 덕목은 삼종지도와 칠거지악으로 대표되는 순종이다. 올바른 부덕(婦德)을 갖추어 예의 적용은 중요치 않았고 조선의 모든 여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당연한 성차별의 한 모습이다. 그래도 여성을 보호하는 울림이 존재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신분에 의한 특혜도 존재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성차별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신분적 특혜는 어디까지나 지위에 따른 품위를 지켜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동성애에 관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세종이 만들었던 금령이다. 형량은 처음에 걸렸을 시에 장 70대와 다시금 적발되었을 때 장 100대이다. 이외의 다른 동성애 관련 처벌의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의 규정과 비교하고자 한다. 태조 4년(1395)에 완성된 『대명률직해』는 조선의 형법의 기초가 되었다. 『經國大典(경국대전)』이 제정된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나 합당한 법이 없을 때 참고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고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 사용되었던 『대명

를직해』의 범간조(犯奸條)를 기준으로 삼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범간조는 강간(強姦)이나 간통(姦通) 따위의 죄를 범한 일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으며 화간(和姦), 강간(強姦), 조간(刁姦)이 있다. 화간은 오늘날의 간통의 의미로, 부부 사이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의 합의 하에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명률직해』에서는 통간(通姦)이라는 말로 쓰였다.<sup>94)</sup>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간은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여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에 남성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이 주체가 되어 남성을 피어내는 경우도 조간에 해당된다. 즉, 한 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해 내어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궁녀의 삶에서 성(性)과 관련한 부분들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궁녀들의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심한 경우는 참형에 이르는 규제를 두어 이성과의 교제를 통제하고자 했다.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한을 만들어 둔 까닭은 궁중의 비밀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95)</sup>

그렇다면 궁녀 간의 동성애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화간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궁녀를 국왕의 아녀자로 보는 것이다. 궁녀가 되기 위해서 입궁하는 여성들은, 국왕과의 암묵적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원칙적으로 다른 남성과 교제할 수 없었다. 이는 궁녀들의 성을 통제하는 근거이자 함부로 사랑을 나눌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승은(承恩)을 입지 못하더라도 궁녀들의 지아비는 국왕이기 때문에 개개인 모두가 결혼한 상태의 부부로 볼 수 있다. 즉, 부부 사이가 아닌 두 여성이

94) 고사경, 정도전 외2명 저, 박철주 역(2014), 『역주 대명률직해』, 민속원, 579쪽. 주 1 참조.

95) 신명호(2004), 앞의 책, 257~264쪽.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관계를 맺어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궁녀를 왕의 소유물로, 즉 왕실 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궁녀는 엄연히 직책과 서열에 따라 품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노비의 신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녀들을 일반 사대부 집안의 노비처럼 하나의 재산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본다면 궁에서 지내는 여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명률직해』에 실려 있는 같은 신분의 노자(奴子)끼리 범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은 화간의 처벌을 받는다.<sup>96)</sup> 이에 주목하여 『대명률직해』에서 찾을 수 있는 화간과 관련한 법규들을 파악하여 세종의 금령 처벌과의 수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다만, 봉씨의 경우는 화간이 아니라 강간으로 보아야 맞다. 소쌍은 이미 단지와 연인 관계였다. 봉씨가 침소로 불러 강제로 함께 밤을 보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녀는 이를 원치 않았으나, 신분적 한계로 인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봉씨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애정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국왕의 아녀자를 세자빈이 함부로 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상대의 의사 동의 없이 세자빈의 일방적인 강압으로 진행된 관계인 것도 문제이지만, 왕실의 재산이자 왕의 여자를 건드린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① 남자가 강간을 한 경우에는 강간을 당한 부녀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sup>97)</sup>

② 강간을 행한 경우에는 강간범을 교수형에 처한다. 이때 강간을 행하였으나 아직 성적인 관계까지는 갖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 강간미수범에게 장 100대를 친 후 멀리 유배 보낸다.<sup>98)</sup>

96) 고사경, 정도전 외2명 저, 박철주 역(2014), 앞의 책, 590쪽. 奴婢亦 相姦爲在乙良 凡姦例以 論爲乎事.

97) 고사경, 정도전 외2명 저, 박철주 역(2014), 앞의 책, 580쪽. 强姦爲在乙良 婦女不坐.



먼저 ①의 조항에 따르면 소쌍의 경우에는 강간을 당한 부녀자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법으로 일방적 강간을 당한 자를 보호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화간이나 강간에는 신분에 따른 상황참작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반 남성이 천민이나 노비인 여성과의 화간이나 강간은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천민 신분의 남성이 양반 여성을 겁탈했다면 상황은 달랐다. 즉, 신분에 따른 구분으로 누군가와 관계했는가는 사건 판별의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는 유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었기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소쌍이 혐의가 없다고 사료되는 이유는 봉씨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가졌던 잠자리로 보아야 적절하기 때문이다. ②에 따르면 강간죄로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강간범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강간을 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장 100대를 맞고 먼 곳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대명률직해』를 그대로 따랐다면, 봉씨가 일방적으로 소쌍과 남녀가 희롱하는 행동을 일삼았기에 강간죄가 성립되어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봉씨는 세자빈이라는 직위가 있었고 궁녀들을 처벌했던 금령을 제외하고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폐출로 마무리 된 것이다. 그렇다면 폐출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지가 남는다. 동성 간의 화간일 경우에는 앞선 세종의 금령을 통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지만, 동성 간의 강간의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폐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봉씨에게는 교형에 버금가는 처분임을 생각해야 한다.

세종도 자신의 며느리를 직접 죽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자빈

---

98) 고사경, 정도전 외2명 저, 박철주 역(2014), 앞의 책, 579쪽. 强姦爲在乙良, 絞死齊. 未成者乙良, 杖一百遠流齊.

의 직책에 맞지 않는 행동과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쫓아낸 것인데, 출궁하는 순간부터 봉씨는 집안의 망신이자 사람들의 평생 놀림거리였을 것이다.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상황을 일평생 참고 살아야 했다. 재가는 할 수 없었을 터이고 원통함과 수치심에 못 이겨 자살에 이를 수 있었다. 세종의 결단이 단순한 폐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삶에 사형선고를 내린 처벌로 볼 수 있다.

무릇 부부 사이 또는 남편과 첩과의 사이가 아닌 사이로 남녀가 처음부터 서로 뜻이 맞아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두 남녀에게 각각 장 80대를 치되, 이때 여자가 유부녀이면 여자는 장 90대를 치고 남자는 장 80대를 치도록 한다. 성관계를 갖자고 잘 달래고 가르쳐 이끌어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를 갖자며 반강제로 데리고 가서 서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잘 달래고 이끌었거나 반강제로 데리고 간 자에게 장 100대를 치고 상대방에게는 장 80대를 친다.<sup>99)</sup>

다음은 화간의 기본적인 처벌 내용이다.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남녀 모두 장 80대의 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성이 유부녀일 경우에는 장 90대를 맞고, 남자는 그대로 80대를 집행한다. 여성은 결혼여부가 죄의 형량에 영향을 주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었다. 조선시대에 남성이 여성보다 성의 규제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법 조항이다.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여 피어내거나 반강제로 관계가 진전되었을 때인 조간의 경우, 데리고 간 자는 장 100대를, 상대방은 80대를 적용하여 차등을 두고 있다.

소쌍은 단지와의 동성애라는 혐의는 벗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금령

99) 고사경, 정도전 외2명 저, 박철주 역(2014), 앞의 책, 579쪽. 凡 和姦乙良 杖八十遣 有夫是去等 杖九十齊 通姦教誘引去爲在乙良 杖一百齊.

에 따라 장 70대 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세종의 금령에서의 형량과 『대명률직해』 범간조 화간의 형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동성애 처벌이 『대명률직해』의 수위와 비슷하게 발맞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장형(杖刑)은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다. 죄의 경중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최소 60대부터 최대 100대까지 집행되었고,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심해 여성을 물론 남성도 엉덩이 살이 굵아 터져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다. 사형을 제외하고 형벌 중에 치사율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악명 높은 처벌이었다.

몸이 약한 여성들은 장 70대만 맞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기에, 실제로 형벌 집행을 목적으로 규정을 만든 것이라기보다 적발 시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 목적의 성격이 드러난다. 단순 호기심 또는 외로움을 채우는 행위로서 동성애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종이 동성애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성애는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추잡스럽고 입 밖으로 내기에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풍습이 있음을 미워하는 것은 아마 하늘에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 된 것이리라.”<sup>100)</sup>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궁중에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악습(惡習)에 대한 경고이자 왕실 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

100) 『世宗實錄』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予之惡有此風, 殆天誘其衷而然也.

## IV. 맺음말

이 글은 세종의 여성 성(性) 인식을 확인하고 세자빈 봉씨 폐출 사건을 중심으로 동성애 처벌의 논리와 그 의의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세종대에는 조선의 기본 틀인 유교를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배포하여 사상적 체계의 기반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를 위해 『小學(소학)』과 『三綱行實圖(삼강행실도)』의 간행 및 배포를 통해 교화를 이루고자 했다. 『소학』은 주자가 집필한 저서로 옛 경전의 내용을 담아 유학 사상이 집성되어 있는 책이다. 여성의 기본 덕망(德望)과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규제를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은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인물로, 삼종(三從)의 도(道)로 남성(부모-남편-아들)에 종속되어 외간 일에는 간섭할 수 없었으며 오직 집안일에 몰두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내조해야 했다. 또한,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언제든 내쳐질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서 일생을 지내야 했다. 삼불거(三不去)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축첩제가 가능했던 조선사회에서 단지 정실(正室)의 위치를 고수하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삼강행실도』에서는 국가적으로 여성의 성을 규제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을 탈성화(脫性化)시키고 모든 부인들이 절개와 지조를 지켜 수절(守節)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앞서 『소학』에서 알 수 있었던 사상적 함의들을 모두 내포하여 그림과 설명으로 풀어내었다. 이를 통해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기개를 가지고 있음을 찬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

까지나 국가적,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충신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와 같이 여성의 재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왜적의 침입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남성과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횡포이자 폭력이었고 일방적 강요였던 불합리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세자빈 봉씨 사건의 전말과 세종의 대처 과정은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의 세종 18년 10월 26일과 같은 해 11월 7일 두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폐출의 주요 사안은 궁녀 소쌍과의 동성애였다. 하지만 세종이 직접적인 기록을 남기기 싫어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대체된다. 사유는 칠거지악(七去之惡)에 근거하였고, 평소 행실을 언급하며 대신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세종의 말을 듣지 않고 며느리의 예를 보이지 않은 불순(不順), 권승휘의 임신과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표출한 투기(妬忌), 밤마다 세자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이고자 했던 것과 노래를 만들어 궁인들에게 부르게 했던 음행(淫行), 궁중의 음식과 물건을 사사로이 반출했던 절도(竊盜) 등이다.

동성애의 처벌과 관련하여 세자빈은 폐빈이라는 조치가 취해졌고, 소쌍과 단지의 경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바를 알 수 없다. 다만, 감시하는 여관(女官)을 두어 적발되었을 시에 장 70대, 한 번 처벌받은 자가 다시 걸렸을 경우 장 100대를 집행하게 했던 세종이 만든 금령(禁令)에 의거하여 처벌받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大明律直解(대명률직해)』의 범간조(犯奸條)를 따라 일반적인 남녀 간의 성범죄로 보았을 때, 봉씨와 소쌍의 관계가 강간으로 판별되었다면 봉씨는 교형에 처해져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소쌍의 경우에는 단지와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면 무죄였다. 즉, 일방적·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



고자 했던 사람이 죄의 형량이 무거웠던 것이다. 화간으로 적용이 된다면 소쌍과 단지는 모두 장 80대의 형이 내려지는데, 이는 세종의 금령과 큰 차이가 없다. 금령의 수위가 『대명률직해』에서 정해둔 형량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장 70대 이상을 맞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었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벌이었다. 동성애에 대한 세종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자, 함부로 범할 수 없도록 경고하는 메시지였다.

본 논고는 유교적 질서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인식과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떠한 논리로 다루고자 했는가를 담고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만, 가족의 울타리는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며 개인의 삶이 더욱 강조되어가고 있다. 즉, 이전 시대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연대를 만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살아가고 있다. 성소수자들 역시 이에 발맞춰 사회에 자신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정상’, ‘추잡함’, ‘더러움’, ‘에이즈의 근원’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강하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자 했던 바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들인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편견으로 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해 “세종대에도 처벌을 했는데 지금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선부른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조선시대를 조금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史料)

『朝鮮王朝實錄』  
『小學』  
『三綱行實圖』  
『大明律直解』  
『五洲衍文長箋散稿』  
『海槎錄』

### 2. 단행본

정성희(1998), 『조선의 성풍속(여성의 성문화로 본 조선사회)』, 가람기획.  
신명호(2002),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돌베개.  
신명호(2004), 『궁녀』, 시공사.  
이기석(2008), 『소학』, 홍신문화사.  
김정수(2010),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애너매리 야고스 저, 박이은실 역(2012), 『퀴어이론 입문』, 여이연.  
고사경, 정도전 외2명 저, 박철주 역(2014), 『역주 대명률직해』, 민속원.

### 3. 논문(論文)

김용숙(1983), 「구한말의 궁중풍속(溝韓末의 宮中風俗)」, 『문화재』 제16권.

- 김진명(1994), 「전통적 담론과 여성억압」, 『한국문화인류학』 제26권.
- 조은(1997), 「모성, 성, 신분제 - 『조선왕조실록』 “제가 금지”담론의 재조명」, 『사회와 역사』 제51권.
- 강명관(2002), 「『삼강행실도』- 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권.
- 신수경(2007), 「조선시대 열녀도 양태와 <烈女徐氏抱竹圖>」, 『미술사학연구』 제253호.
- 김경미(2008),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 <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제17권.
- 이관택(2009), 「성적소수자에 관한 기독교 윤리학적 연구 : 동성애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호(2009), 「청소년 동성애와 상담방안에 관한 연구 : 개별, 집단, 가족, 학교 상담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 양성희(2009), 「대중문화 속 동성애 표현의 현주소」, 『관훈저널』 봄호 통권110호.
- 조현준(2009), 「팬픽 문화와 젠더 트리플 - 동성애 코드를 다루는 영화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봄호 통권 제80호.
- 한희숙(2010), 「조선 태조·세종대 세자빈 폐출 사건의 의미 : 현빈 유씨, 휘빈 김씨, 순빈 봉씨를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제14호.
- 윤진욱(2010), 「조선전기 ‘소학계 연구」, 『경주사학』 제32집.
- 허호익(2010),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 - 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단』 제38호.
- 이종원(2011), 「동성애자들의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 『철학논총』 제65집.
- 김용현(2011), 「조선전기 사림과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제19집.
- 김명수(2012),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 균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1호.
- 조서연(2012),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타난 TV드라마의 동성애」, 『한국극예술연구』 제35집.
- 이자혜(2012),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 재현과 담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 한윤화(2013), 「동성애 관련 뉴스 프레임 연구 :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강문중(2015), 「전통시대 同性愛 연구」, 『영주어문』 제30권.
- 전원근(2015), 「1980년대 선테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제2호.
- 이정철(2015), 「조선시대 사림의 기원과 형성」, 『조선시대사학보』 제73집.
- 이영란(2016), 「『소학』을 통해 본 조선시대 여성상」, 『인문학연구』 제51권.
- 유은혜(2018),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3호.
- 이남희(2018), 「세종시대 『소학』의 보급·장려와 그 역사적 함의」,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19집 제2호.
- 여성훈(2019), 「한국 사회의 동성애 담론의 구조적인 난제」, 『神學과 世界』 제96호.
- 홍성수(2019),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성소수자」, 『가톨릭평론』 제21호.
- 김미라(2020), 「TV드라마 장르 - 사회간 공진화 연구 - 동성애 재현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69집.
- 박홍규·송재혁(2012), 「세종과 『소학(小學)』 : 민풍(民風)과 사풍(士風)의 교화」, 『대한정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 박지훈·이진(2013),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텔레비전에 나타난 홍석천과 하리수의 이미지 유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28호.
- 이정민·이동영(2019), 「대학생이 인식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교연구 : 장애인·다문화인·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차이 및 영향요인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3권.
- 공성욱·오강섭·노경선(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제41권 제5호.
- 이영선·권보민·이동훈(2012),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제19권 제1호.

#### 4. 기타

정철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 되면 책임져라? 29일 ‘조선일보’에 실린 동성

애 반대 광고 논란”, PD 저널, 2010.09.30. 수정,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48>, 2021.04.08. 접속.

김신의, “올해도 퀴어축제 ‘선정성’ 논란”, 크리스천투데이, 2019.06.03. 수정,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2928>, 2021.03.28. 접속.

김선경, “경남 처서 퀴어축제·반대집회 동시 개최 앞두고 긴장 고조”, 연합뉴스, 2019.11.26. 수정,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114600052?input=1195m>, 2021.03.28. 접속.

류한열, “류한열의 서향만리 - 무지개가 아름다울 수 없는 이유”, 사설, 경남매일. 2019.11.28. 수정, [http://www.gnmaeil.com/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kohflyu](http://www.gnmaeil.com/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kohflyu), 2021.03.28. 접속.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大明律直解』 283조, 주D001 참조. 2021.05.07. 접속. [http://db.itkc.or.kr/inLink?DCI=ITKC\\_GP\\_1461A\\_0190\\_010\\_0070\\_2019\\_001\\_XML](http://db.itkc.or.kr/inLink?DCI=ITKC_GP_1461A_0190_010_0070_2019_001_XML)

